



# 2015 불량학칙 공모전 결과 발표회

일시 : 2015년 11월 24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620호

주최 :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진행순서

---

10:00~10:10 여는 시간

---

10:10~10:40 <불량학칙 공모전> 경과보고 및 사례 발표 \_강영구 3쪽

---

10:40~10:50 공모 사례로 본 현 학칙의 문제점 \_조영선 23쪽

---

10:50~11:00 현 학칙을 개선하기 위한 원칙과 방향 \_공현 34쪽

---

11:00~11:10 쉬는 시간

---

11:10~11:50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

---

# 〈불량학칙 공모전〉 경과보고 및 사례 발표

## I. 개 관

제보 사례 수	
고등학교	61
중학교	46
합계	107

	내용	사례 수
자유·권리제한	두발 규제	32
	복장 규제	53
	기타용의 규제	25
	휴대전화 금지	10
	옆반출입 금지	1
	고3 입시공부외활동(독서,운동) 금지	2
	이성교제 금지	11
	강제학습	7
	예의없는행동 금지	5
	교사지시불응 금지	2
	학교비판 금지	6
	집회참여 금지	4
	정치참여 금지(대외행사참여 금지)	3
	기타 규제(학교엘리베이터사용 금지 등)	23
차별	성적 차별	5
	성별 차별	4
단속·처벌	소지품 검사	7
	기숙사 검사	2
	CCTV 감시	2
	학생간 감시	1
	체벌	9

	단체기합	2
	상벌점제	58
	상점자 해외연수우선권 등 부여	1
	벌점자 반성문, 서약서 등 쓰기	3
	벌점자 학교행사(축제, 체육대회) 참여 금지	2
	벌점자 식사 금지	2
	벌점자 외출, 외박 금지	1
	벌점자 퇴학	3
	압수, 물품폐기	18
	깜지쓰기	2
	기타 자의적 처벌 (땡별에 앉아있기, 맨발로 다니기 등)	7
학칙제개정시 학생참여 배제	이의제기 금지	1
	개정요구 금지	4
	동의서작성 강제	1

(1개의 사례가 여러 분류 항목에 해당할 경우 중복 계산. 단, 1개의 사례가 1개의 분류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중복 계산하지 않음)

## Ⅱ. 사례 내용 분석

### 1. 자유와 권리 제한

#### 〈두발 규제〉

##### ■ 부산 D고등학교

##### [공모내용]

두발 길이도 귀 밑 15센치로 제한을 두는데 그 와중에도 귀 밑 7센치가 넘어가면 한갈래로 묶고 다녀야합니다. 머리가 묶일 만큼 충분히 긴 길이가 아닌데도 외가닥뭉기를 실천하라며 매번 소리지르는 선생님들이 계시구요. 머리 고무줄 마저도 장식 없는 검정색으로 통일돼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학생부 점검이라고 해서 각 교실에서 하거나 전교생을 체육관에 모아놓고 반별로 한 줄로 세워 용의복장을 점검합니다. 이번 달에는 16일 금요일 (어제)에 했는데요, 제 친구가 두발 길이 규정에 맞게끔 목요일에 머리를 15센치 이내로 잘라왔는데도 점검하시던 선생님이 13센치면 어쨌든 15센치가 될 것이 아니냐며 잡았고, 머리 길이 규정은 분명 15센치라고 명시돼있는데 13,14 센치에 대한 언급은 기존에 없었으면서 전부 잡아 벌점을 매기고 혼난 학생들이 저희 반에만 해도 세명쯤 됩니다.

##### [학칙]

구분	세 부 규 정	
두발	길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밑 15cm이내(8쪽 참조)</li> </ul>
	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형 단발</li> <li>- 컷트, 중머리형은 불가</li> <li>• 외가닥으로 묶음</li> <li>- 일부분만 묶어서는 안 됨</li> <li>- 귀밑 7cm이내면 묶지 않아도 됨</li> <li>• 파머, 염색, 코팅 불가</li> </ul>
	악세서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머리카락 묶는 고무줄은 무늬가 없는 검정색(장신구 부착불가)</li> <li>• 머리핀은 무늬가 없는 검정색</li> <li>• 머리띠는 무늬가 없는 검정색(실내에서만 착용 가능)</li> <li>• 반지, 귀걸이, 색상이 있는 안경(콘택트)렌즈 착용 불가</li> </ul>



■ 부산 K고등학교

[공모내용]

머리를 묶지 않는 경우 지적을 받음.  
 따로 징계의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급식실 출입을 제한함.  
 머리가 마르지 않아도,  
 묶지 않아도 짧아서 단정한 경우에도.

[학칙]

제32조 (두발과 용모)

(1) 두발은 항상 단정히 하고, 어깨 아래로 내려오는 긴머리의 경우 단정하게 묶으며(귀 밑 20cm이내) 퍼머 및 염색 등을 하지 않는다.

(2) 무스나 스프레이로 두발을 변형시키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눈썹 변형을 하거나 손톱 메니큐어를 바르지 않는다.

■ 경기 부천 S고등학교

[공모내용]

염색, 파마를 하면 반성문을 쓴다.

염색, 파마를 하면 학생답지 못하다는 말로 혼을 내시는데 학생다움의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다.

머리색이 빨간색이면 공부를 못하는건가? 파마를 하면 학생답지 못 하는건가? 모르겠다. 그건 옛날 사고방식 같다. 비유를 하자면 할머니들이 머리 긴 여자를 보면 귀신같다고 머리 좀 째매라고 하는 것 같다. ㅋㅋ 진짜 이해 안 된다 언제부터 학생다움의 기준이 만들어진 건지 모르겠다.

하물며 자연갈색머리도 검은색으로 염색해 오라는 것도 웃기다.ㅋㅋㅋ

그 아이의 태생적인 머리색인데 그걸 검은색으로 염색하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해 안 된다..

■ 충북 청주 D고등학교

[공모내용]

**투블럭 별점 5점**  
수채화엔 색이 없으면 절대로 그림이 될 수 없습니다. 학생도 개성이나 개인 나름의 색이 있는데, 학교에 의해 통제 되면 절대로 그림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뜨는 머리, 생머리, 반곱슬, 머리 종류도 다양한데 왜 항상 한가지만 원할까요  
전 왜 학교규정으로 머리를 잘라서 주말에 밖에 나갈 때마다 범죄자처럼 모자를 쓰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장 규제〉

■ 부산 Y중학교

[공모내용]

\*친구에게 허락을 받고 대신 응모하는 거예요! 혹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싶어 저한테 부탁했대요.

제 친구는 어제 체육복을 입고 하교를 하다가 별점을 받았어요. 어제는 스포츠데이라서 어떤 선생님들은 체육복 하교가 가능하다고 했고, 어떤 선생님들은 안 된다고 했대요. 애초에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어제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미리 된다면 된다, 안된다면 안 된다 협의를 하고 학생들에게 말하는 것이 옳은 일 아닌가요?

친구네 학교는 여중이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치마를 입어요. 치마는 불편하고, 또 뒤에서 누군가 쳐다보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해요. 요즘이 워낙 흥흥한 세상 이니까요. 그런데도 체육복 등하교를 하지 말라니, 이해가 안되네요. 체육복 등하교를 금지하는 건 이상한 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 충북 J중학교

[공모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J중학교 학생입니다. 불량학칙 공모전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1. 학칙 규칙 벌점규정 내용**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두발규정이 사라졌지만 저희학교에서는 머리 길이가 카라 끝에 닿으면 바로 벌점을 줍니다.

여름에 비가 와서 쌀쌀하거나 한겨울에도 외투를 입으면 뺏기고 학교에 외투를 가져오기만 해도 뺏깁니다.

또한 하복 안에 무늬 없는 하얀색 티를 꼭 입으라고 하며 하얀색 계열의 티가 아니거나 무늬가 있는 경우 바로 벌점을 줍니다.

또한 치마 길이가 무릎선까지 오지 않는 경우 바로 벌점을 줍니다.

**2. 해당 학칙 규칙 벌점규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그로 인해 했던 경험**

학칙을 학생 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며 교사들끼리 정해버리고 여름에 감기에 걸려서 잠바를 입을 때에도 얼어 죽으라고 하며 잠바를 뺏고 벌점을 준다.

치마를 사이즈에 맞게 사서 수선을 하지 않았으며 단을 전부다 늘려도 짧은건데 치마를 새로 사라고 했다.

짧은 단발머리라서 머리가 잘 뺏혀서 고데기를 하면 벌점을 준다.

이러한 일들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규정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불편해하는 것 같다.

또한 너무 심한 학칙과 선도를 하지 않고 무조건 벌점부터 주기 때문에 학칙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 저희 학교 학생들이 학칙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모전을 주최하신 분께서 전국의 학생들이 학칙때문에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불량학칙의 문제점들을 널리 퍼트려서 학칙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학칙]

제6장 용의 사항

제1조 (복장) 학생의 복장에 관한 사항은 다음의 각 항과 같다.(단,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1. 복장은 지정된 교복으로 착용하며 자유복은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기타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1학년 교복>



(동복 상의)



(블라우스)



(넥타이)



(조끼)



(스커트)



(바지)

■ 서울 D고등학교

[공모내용]

치마가 무릎바로위까지 오지않으면 벌점 혹은 휴대폰 압수  
겨울철 담요를 두르거나, 동복을 완전히 입지않고 겹옷을 입으면 벌점 또는 담요,  
외투 압수(추운날 외투뺏기고 가디건을 입고갈 때도 있음)  
지각시 벌점은 고사하고 휴대폰까지 뺏음  
방과후 수업에 꼭 참여해야하며 불참여시 강제야자

겨울철 짝 끼는 동복 외투를 입기 불편해서 가디건 위에 까만 패딩을 입고 갔다가 압수를 당해서 눈이 펄펄 오는 날 가디건만 입고 집에 온 적이 있다.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왜 이런 취급을 받고 다녀야하는 생각이 들었다. 왜 동복을 안 입었냐고 묻지도 않는다. 그냥 뺏는다.

그 외에도 교복치마가 무릎을 덮지않는다고 벌점을 받은 적도 있다.  
또 방과후를 하지않는다고, 야자를 하지않는다고 선생님들께 꾸중을 들은 적이있다. 야자는 말 그대로 야간자율학습인데 내가 이걸 신청하지도않았고 한다고 말한적도 없는데 혼이나야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학칙]

**제27조(용의 규정)**

① 복 장

1. 교복은 규정대로 착용해야 하며 교복 (재킷, 스커트, 블라우스)개조는 일절 금한다.
2. 동복 및 춘추복 착용 시 스타킹은 살구색·커피색·검정색 스타킹을 신을 수 있으며, 보온을 위한 목적으로 레깅스 등도 허용한다.
3. 생활복은 정해진 기간 동안 하복과 혼용하여 입을 수 있다. 단, 반바지의 길이는 무릎 윗선임.
4. 동복착용 시에는 점퍼와 코트(허용 기간에 한하여)를 입을 수 있으며 그 외에는 교복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블라우스, 넥타이, 조끼는 갖춰서 착용해야한다.
5. 동복착용 시 플라(흰색·회색·검정색의 무늬 없는 것)을 입을 수 있다. 단, 블라우스와 플라를 함께 착용할 수 없다.
6. 동복착용 시 교실과 교무실에서는 외투를 벗고 교복만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투착용을 허용하는 지정된 기간은 예외로 한다.
7. 카디건은 허리까지 내려오는 검정색과 검정만 허용한다.
8. 동복 스커트의 길이는 1학년은 무릎 중앙, 2·3학년은 무릎 윗선까지로 한다.
9. 하복 스커트의 길이는 1·2·3학년 모두 무릎 윗선까지로 한다.

■ 대전 D고등학교

[공모내용]

**2. 복장 가장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외투를 입는것이 아니라 교복을 더 껴입었다고 벌점을 2점 줍니다  
 제 사례를 들자면 여름 막바지에 비오고 바람불어서 동복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벌점을 주었고 아침에 추워서 동복 자켓을 입었는데 또 벌점을 받았습니다  
**날씨와 상관없이 학교에서 춥든 덥든 입을란대로 입어야 하는것이 가장 불편합니다**

[학칙]

용의복장	6	슬리퍼 착용 등하교 및 외출	1
	7	장신구 착용(귀걸이, 목걸이, 팔찌, <u>피어싱</u> 등)	2
	8	염색, <u>피머</u> , 매니큐어, 화장 등 기타 용의복장 위반	2
	9	<u>교복 착용 상태 불량(교복 변형, 신발, 양말, 명찰등 포함)</u>	<b>2</b>

<별표4> 용의규정

내용 구분	남 학생	여 학생
복장 (14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정된 교복을 단정히 입음 (춘추복 및 동복 착용 시 넥타이 착용)</li> <li>2. 명찰 및 부착물은 정한 위치에 패용</li> <li>3. 양말을 신음</li> <li>4. 하복 상의 속에는 흰 속옷을 입음. 그 외의 색이나 글자, 무늬 있는 옷은 금지</li> <li>5. 교복 이외의 겹옷은 실내에서 착용 금지</li> <li>6. 방한 목적의 속옷은 겉으로 보이지 않게 착용하고, 회색·검은색·흰색 <u>폴라티를</u> 착용할 수 있음</li> <li>7. 줄여서 몸에 꼭 맞는 교복을 입는 학생은 철저히 지도함. (<u>줄바지</u> 등)</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정된 교복을 단정히 입음 (춘추복 및 동복 착용 시 넥타이 착용)</li> <li>2. 명찰 및 부착물은 정한 위치에 패용</li> <li>3. 스커트 길이는 무릎을 덮음</li> <li>4. 양말이나 스타킹을 신음 (스타킹은 무늬 없는 검정색·살색을 신음)</li> <li>5. 하복 상의 속에는 흰 속옷을 입음. 그 외의 색이나 글자, 무늬 있는 옷은 금지</li> <li>6. 교복 이외의 겹옷은 실내에서 착용 금지</li> <li>7. 방한 목적의 속옷은 겉으로 보이지 않게 착용하고, 회색·검은색·흰색 <u>폴라티를</u> 착용할 수 있음</li> <li>8. 줄여서 몸에 꼭 맞는 교복을 입는 학생은 철저히 지도함. (<u>줄바지</u> 등)</li> <li>9. 지정된 교복 바지를 입을 수 있음</li> </ol>

<기타 용의 규제>

■ 대전 B중학교

[공모내용]

소지품검사 이거는 정말 할짓이아니라고봅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라고 봐요 **선크림마저 뺏어갑니다.. 립밤마저도요. 걸리면 벌점5점 한방입니다ㄸ...** 정말 학교를 다니라는건지 뭔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학칙]

제 15조(기타 용의복장 및 휴대품) ①각 학년별로 정해진 색상과 규격의 명찰을 단다.  
 ②가방은 흰색이 아닌 양 어깨에 메는 검소한 제품으로 한다.  
 ③목걸이, 귀고리, 반지, 팔찌, 모자, 색안경, 썬클렌즈 등 장식품을 소지·착용하지 않는다.  
 ④화장을 하지 않으며, 손톱을 기르거나 매니큐어 등을 바르지 않는다.  
 ⑤실내에서 외투, 장갑, 목도리, 모자 등을 착용하지 않는다.  
 ⑥위험 물품을 소지하지 않는다.  
 ⑦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히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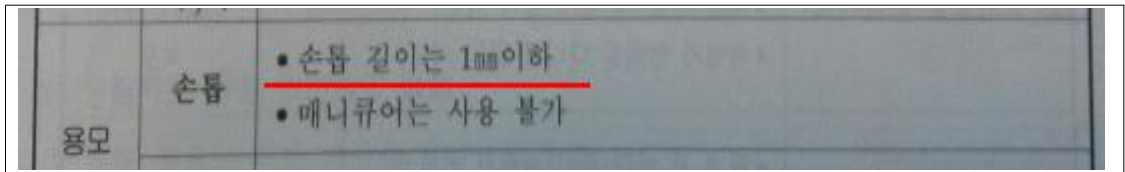
■ 부산 D고등학교

[공모내용]

손톱은 손가락 끝에서 1mm였나 3mm였나 가물가물한데 길이규정 있습니다. 손톱이 위로 떠서 자라서 짧으면 피나는 저는 점검할때마다 짧게 깎고 엄청 고생합니다.

립밤도 색 없는 립밤인 것 뻘히 알면서 손에 발라 보여줘도 뺏어가고 벌점주고, 입술 갈라터진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칙]



<휴대전화 금지>

■ 인천 G중학교

[공모내용]

**휴대폰 소지 금지**  
 -> 벌점 5점, 각서 작성, 휴대전화 압수 (1회: 1주일, 2회: 1달, 3회:1학기)

[학칙]

제18조 (휴대물품) 학생의 휴대물품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휴대폰은 절대 소지 금지한다.**

**가. 1회 위반 시 - 담임(담당)교사에게 학생이 각서를 쓰고 1주일 후에 돌려줌**

**나. 2회 위반 시 - 담임(담당)교사에게 학부모와 학생이 각서를 쓰고 1개월 후에 돌려줌**

**다. 3회 위반 시 - 담임(담당)교사에게 학부모와 학생이 각서를 쓰고 학기 후에 돌려줌**

※ 단, 수학여행, 체험활동, 수련회 등 야외 활동 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

<타 반 출입 금지>

■ 서울 D중학교

[공모내용]

다른 반 들어가면 벌점  
**친구 보러 옆 반에 들어갔는데 벌점을 받았다**

[학칙]

구분	벌점세부항목 (1회당)	벌점
생활	수업지각(1교시), 무단결과, 무단조퇴	2
	무단결석(1일)	3
	지각(정문에서 08:30이후), 수업지각(1교시를 제외한 수업시간), 무단 외출	1
	교내행사 무단 불참, 교외 단체 활동 또는 행사 무단 불참	1
	청소활동에 지속적으로 불성실하게 참여	1
	월장(출입문을 사용하지 않고 담 등을 넘어 학교 출입)	1
	학교 허락없이 티켓 제작, 판매, 알선 및 행사 참석	1
	학생출입 금지 장소 출입 (교사화장실, 시험기간 중 교무실 무단출입 등)	1
	수업시간 중 전자기기(MP3, 휴대폰 등) 무단 사용	2
	수업시간 중 전자기기(MP3, 휴대폰 등) 책상 위 방치	1
	사행성 오락 (카드, 화투, 동전치기 등)	1
	음란물 반입, 탐독, 시청	1
	교내에서 불건전한 이성교재 (포옹, 입맞춤, 무릎에 앉기 등)	3
	수업태도 불량 (교재준비 소홀, 학습과제 불이행, 잡담, 취식행위 등)	1
	<u>수업 및 타인 학습 방해(불필요한 질문, 소란행위, 임의로 자리 바꾸기 등)</u>	1
빈 교실 무단 출입	1	

### 〈고3 입시공부 외 활동 금지〉

■ 울산 H고등학교

[공모내용]

**고3한테만 적용**  
**점심시간 운동금지, 독서금지(도서관에서 책 대출목록 확인 후 3학년의 대출기록 확인시 체벌)**  
 체벌은 앞으로 나란히, 옆드려뻗쳐, 옆드려뻗쳐서 엉덩이 맞기, 서서 엉덩이 맞기 등 정해진 것 없이 선생님 스타일에 맞춰 변형  
 학교의 공식적인 규칙이 아닌 단지 선생님께서 속된말로 꼴보기 싫다고 만든 규칙

■ 경남 김해 D고등학교

[공모내용]

학교 교복 안에 무조건! 흰 티를 입어야 해요. 특히 여학생들같은 경우에는 속옷이 다 비치거든요 흰옷 입으면 그런데도 보는 사람 없다며 입으라고 합니다. 등교할 때 걸리면 교문에서 지도를 받아요 보통 앉았다 일어났다 하거나 '티를 입지 않겠습니다'를 복창해요

그리고 고3은 밖에서 공놀이를 못하게 해요. 축구하면 축구공 뺏아가고 벌점날려요

<이성교제 금지>

■ 울산 S중학교

[공모내용]

이 사진자료 중에서 7번항목을 보세요

거기에서 `교내외 지나친 애정행위'라고 적혀 있습니다. 문제는 이 규정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선생님들에 따라서 다른데 이거 때문에 주말에 여친과 같이 밥 먹으러 가거나 보는것과 심지어 여친과 같이 대화나누는거 때문에 바로 선도위원회 회로 회부당한 애들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어떤 선생님은 이런애들 잡으려고 주말에 시내에서 잠복근무를 하는 등 약간 사생활 침해까지도 이어져 갑니다.

도대체 '지나친 애정행위'가 뭐죠?

이성친구랑 같이 사귀는 거 자체가 지나친 애정행위인가요?!

[학칙사진]

[Empty box for school rules photo]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은 상벌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바로 선도위원회로 회부한다.

장기간 무단 결석(3일 이상)	7) 교내외 지나친 애정행위	13) 특별교육이수 이상
수업 중 휴대폰 사용 행위	8) 부정행위	(그린마일리지 별점 25점
교권 침해 행위(불경한 언행	9) 교내외 흡연, 음주 및 담배,	상)에 해당되는 경우
및 욕설 등) 및 지도 불응	주류 소지	14) 의도적 학교 기물 파손
절도	10)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15) 기타
오토바이등 원동기 사용	11) 수업 중 무단 이탈	
주민 민원 야기	12) 파마, 염색	

■ 대전 D고등학교

[공모내용]

3. **풍기문란 5점** :  
남학생들과 어떠한 대화를 하는 것도 안 되고, 작년에는 남자반을 지나가는 통로를 여자애들이 못 가게 하고 선생님들이 거기서 감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야간자율학습 쉬는 시간이 20분이었는데 어떤 학생들이 풍기문란죄를 지었다고 전체 학생에게 책임을 물어 10분으로 줄였습니다. 이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누리는 쉬는 시간을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줄였습니다.  
 남학생 통로를 지나면 교무실을 빠르게 갈수 있지만 그 통로를 막아버려서 한참을 돌아 가야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학칙]

퇴폐 행위	29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	
	30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
	31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강제 학습〉

■ 서울 G고등학교

[공모내용]

**3. 성적 최상위 학생들은 공휴일에도 등교해 자습해야 함**

- 이 또한 학칙으로 명시되어있지는 않으나 담당 교사가 "학교장 추천권"을 무기로 학생들을 협박해 강제로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자습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하교시각 정각을 제외하면 학교를 완전히 폐쇄해 밖으로 나갈 수도 없으며, 교사 내에 여학생 20여명을 제외하면 아무도 없어 안전사고나 외부인 침입 등에 대한 대책도 없습니다.

**6. 야자 불참시 각종 "학교장 추천 전형"의 추천 대상자가 될 수 없음.**

—심지어 건강상의 사유로 야자를 그만둘 경우에도 추천을 포기해야 합니다.

**[학칙]**

영역	코드	상점 내용	상점	비고
수업 및 학습 태도	1	수업준비 및 참여도가 매우 뛰어나 모범이 되는 학생	2	신설
	2	수업 도우미 또는 교사의 수업활동을 성실하게 도운 학생	2	신설
	3	수업태도나 학업성적이 의미 있을 정도로 개선된 학생	2	신설
	4	수업태도가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학생	2	신설
	5	1개월간 점심자습에 성실하게 참여한 학생	1	옴김
	6	야간자율학습 개근을 30일(학생이 증빙자료 제출) 이상 참여한 학생	1	신설
참고	1	※ 별점이 없는 다상점자에 대한 혜택. 방과 후 학교 우선 선택권, 야간자율학습 우선권, 해외연수 우선권, 봉사활동 참여우선권 등을 주고 상점을 많이 취득한 학생(20점 이상)에게 표창장(노력상)을 부여함.		
	2	▶ 상점 : 학교에서 정한 상점 기준표에 의거하여 전교사가 부여하며 상점누계 10점→15점(매일) 이상 대상자는 교내 표창 우선 대상자 지정(부상으로 문화(도서)상품권(1장) 등을 줄 수 있음)		
	3	▶ 상벌점제에 따른 표창 및 훈육내용은 생활기득부에 기록할 수 있음.		
영역	코드	벌점 내용	벌점	비고
수	1	야간자율학습과 8교시 자율학습 방해(무단불참, 지각, 잤담, 음식물 섭취, 소음, 잤은 출입 등)한 학생	2	옴김
	2	도서대출 연체한 학생(반납일자 경고 후 연체료를 내지 않은 1주후부터 연체료와 벌점 부과(1일 1점 부과)	1	조정
	3	가방없이 등교하는 학생(학교 행사 등으로 사전 허락된 경우는 제외)	1	옴김

■ 경기 평택 P고등학교

**[공모내용]**

**5. 야간 자율 학습 시간에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에 가려고 나갈 수 없다. (적발 시 적발대장에 적히고 3번 이상 적발 시 강제 귀가 조치 후 한 학기 내내 야자 참여 불가)**



야간 자율 학습 시간에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1시간 20분이나 되는 시간 동안 화장실조차 갈 수 없는 건 고역입니다. 어느 날은 배탈이 난 나머지 선생님이 돌아다니지 않으실 때 몰래 화장실에 갔다 나오는 길에 적발 당했습니다.. 저 위에는 적지 않았지만 야자 시간에 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습니다. 음료 또한 마실 수 없습니다.

학생 인권 규정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규정을 만들어내는데도 저희 학교는 60년 전 교칙에서 벗어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야간 자율 학습도 일주일에 2번밖에 뺄 수 없고, 2번 이상을 뺀다면 아예 참여하지 말라고 합니다. 덧붙여서 학교에서 포기하는 거라는 말과 함께요. 물론 자기주도학습 또한 중요하지만, 그런 자기주도학습으로 sky를 가는 학생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지역의 학생들은 죽어라 학원을 다니는데 너무 뒤쳐지는 기분이 들게 해놓고서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최고라고만 합니다..

## 〈성적 차별〉

### ■ 대구 D고등학교

#### [공모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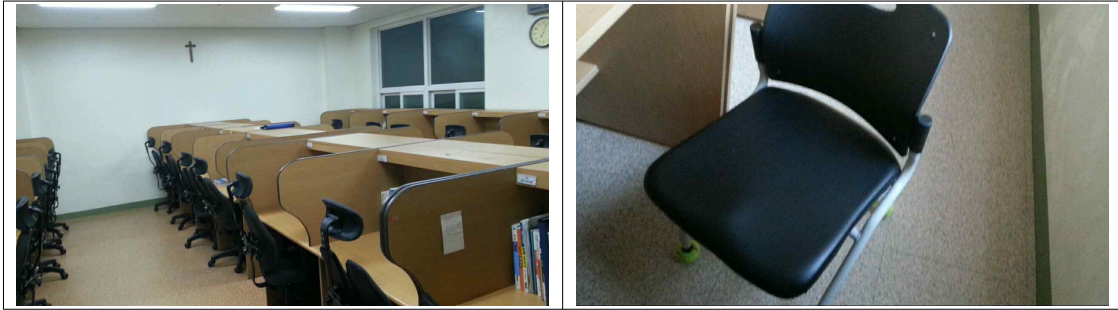
성적순으로 기숙사 독서실을 배정하고, 성적우수자들을 집의 거리와 상관없이 우선 대상으로 선발한다.

우등 독서실 3개를 각각 '양심' '정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기숙사 분기별로 재편할 때 친구들이 이른바 '양정사'에 붙었는지 계속 수근대는데, 떨어졌을 때 뭔가 친구들과하고도 이야기에서 소외되고, 새로 우등생 독서실에 붙은 애 위주로 다른 애들이 붙어서 완전히 순위에만 집착하는 학교 분위기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속상하다.

또한 '양정사'의 책상은 일반 독서실 보다 책상이 넓고, 의자도 등을 편하게 댈 수 있는 굴림의자라고 상대적으로 일반 독서실은 불편하다.

또한 성적순으로 뽑다가 보니 선배들 중에서는 거리가 꽤 되는데도 기숙사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 1분기 (약 반 학기) 동안 불편하게 등교를 하게되는 상황도 생긴다.

우등 독서실 (양심)	일반 독서실
-------------	--------



■ 경남 창원 K고등학교

[공모내용]

학칙에서 성적이 낮으면 학생회장, 반장, 부반장 자격이 박탈되도록 하고 있다.  
 학칙 이외에도, 담임의 추천으로 수여하는 ‘교내백일장’이나 ‘학급봉사상’ 같은 상  
 들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수여하는 모습들을 지켜봐왔고. **성적으로 인해 차별  
 받는 것이 매우 모욕적이었다.**

[학칙]

제36조(자격제한 및 자격상실) 학급반장, 부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 ① 학급 반장과 부반장은 종전과 같이 직전 학기의 석차등급 평균이 50% 이내인 자  
 (단, 학년부장과 담임의 추천으로 예외를 둘 수 있음)
- ② 학생선도위원회가 요구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 ③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학생조치가 확정되었을 때

제40조(선거권, 피선거권)

- 1. 선거권은 본회 회원에게 있다.
- 2. 피선거권은 3학년과 2학년이 될 회원으로서 아래와 같은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에게 있다.
  - ①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은 학생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1일 이상의 사고결석이 없는 학생
  - ③ 선거 직전 1학기 석차등급의 평균이 30% 이내인 자  
 (단, 50% 이내인 자 중에서 학년부장의 추천서 첨분 후 가능)
  - ④ 생활평점카드제 벌점이 10점 초과인 자

■ 울산 E 고등학교

[공모내용]

익명으로 가능할까요? 울산광역시 E고등학교는  
학생회 임원을 성적순으로 넣습니다 면접과 투표는  
없어요!

[학칙]

제62조(임원의 선출 및 자격)

- ①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 ② 회장 및 부회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무단결석이 없으며,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 ③ 각부 부장 및 차장의 선출은 학생회장이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하여 학생회 지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임명한다.
- ④ 선도부는 자율선도단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은 선도부장이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하고, 학생회 지도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임명한다.
- ⑤ 1학년장은 임기의 특성상, 1학기 초에 선출하되, 담임 및 학년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학급의 임원(반장, 부반장, 총무부장, 학습부장, 예·체육부장, 선도부장, 환경부장, 봉사부장, 홍보부장)의 간접선거로 선출하고, 임원이 출마한 경우 투표권을 같은 반 학생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선거규정은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규정에 따름

<성 차별>

■ 서울 Y중학교

[공모내용]

저희 학교는 급식을 성별로 구분지어 먹게 합니다. 남자부터 먼저 들어가고 여자가 들어가는 형식인데요. 남자 3학년>2학년>1학년>여자 3학년>2학년>1학년 순으로 먹게 됩니다. 여자가 들어가는 순서에 남자들 무리가 늦게 오면 여자줄을 끊고 남자들을 먼저 들여보냅니다. 맛있는 밥이 나올 때에 남자학생들이 두세번씩 밥을 먼저 받으면 여자 1학년은 맛있는 급식이 다 떨어져서 배식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차례 건의를 했지만 남자학생들이 밥을 빨리 먹는다는 이유로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 여자들이 먼저 밥을 받았을 때가 있는데 딱히 배식시간이 길어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규칙을 바꾸지 않는 저희학교는 어쩌면 좋을까요?

<예의 없는 행동, 교사지시불응 금지>

■ 광주 S중학교

[공모내용]

애매하고 자의적인 규정들.  
"예절" 규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교사랑 학교에 오는 손님에게 예의바르게 굴라는 거였는데, 교사마다 예의바름의 기준이 다 달라요.

벌점이 5점으로 제일 높은 '교사지도불응'도 있었어요.  
 어떤 이유로든 교사가 진짜 뺏겼는데 때릴 수는 없으니까 막 화내다가 학생이 항의하면 바로 ""너 뭘 잘했다고 말대꾸를 해? 교사지도불응 줄거야 교무실로 내려와!"" 하고 주는거죠.

이유도 되게 자질구레했던 걸로 기억해요. 명찰을 계속 안 달고 왔다거나, 머리카락이 원래 어두운 갈색이나 검은색만 허용되는데 너무 밝게 염색했다거나. 그런 걸 한두번 1, 2점씩 벌점 주면서 잡다가 며칠 계속 되면 '네가 선생님이 우습구나?'하고 주는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학칙]

구분	항	내 용	별 의 내 용				
			훈 계	교내 봉사	사회 봉사	교육 연수	졸석 경지
제1조 예절	1	<u>예의가 바른지 무한 학생</u>	※	※			
	2	용의가 단정치 못한 학생	※	※			
	3	<u>언행이 불순한 학생</u>	※	※			
	4	<u>기타 학생다운 행동을 하지 않은 학생</u>	※	※	※		
	5	종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		
	6	<u>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u>	※	※	※		

■ 청주 S중학교

[공모내용]

인사 및 기본예절 부족: 벌점 1점  
 - 인사를 받아야 한다면 인사를 하고 싶은 좋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교사의 교육적 지시를 어기거나 지고 불응: 벌점 7점  
 - 교사의 지시를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학칙]

예절 및 태도	6	<u>인사 및 기본 예절 부족</u>	1
	7	청소 및 기본 의무 태만	1
	8	학생 신분 및 품위에 맞지 않는 저속한 언행(욕설)	1
	9	<u>교사의 교육적 지시를 어기거나 지도 불응</u>	7
	10	<u>교사 지도에 대한 불손한 태도</u>	5

■ 강원 M고등학교

[공모내용]

국기에 대한 경례 때 부동자세로 가슴에 손을 붙이지 않으면 벌점을 부과합니다. 실제로 교칙이 있는데 "조국과 국기에 대해 불손한 경우"라는 항목으로 벌점 5점을 부과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 조회 시간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던 중 더워서 손부채질을 했다고 벌점 5점을 부과받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가장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항목은 P.189~190쪽 항목에 그려진 표의 22번 항목 - 교사의 교육 목적을 위한 지시 사항에 불응하는 경우, 교사에게 불손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 입니다.

**일명 "지시불이행"-3점이라고 불리는 이 항목은, 한 마디로 교사들이 원하는 규정을 불시에 소환해서 지시를 내리고, 지시를 어길 경우 적지 않은 벌점으로 처벌할 수 있는, 군사정권의 계엄령에 맞먹는 규정입니다.**

애초 제정 이유는 유교적 상명하복의 "예"를 지키자는 의미인데, 실제로는 사감선생님이나 기타 교사가 마음에 안 드는 모든 부분을 규제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단서조항입니다.

문제는 이게 추후 규정 입법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교복 위에 사복 외투를 입는 것에 대해 학교에서 뜬금없이 시비를 걸기 시작한 적이 있는데, 당시 학교는 "교복 위에 사복을 착용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복장 규정에 추가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생 집단/학생회 측에서 반대하자, 교복 위에 사복을 입을 경우 "지시불이행"으로 간주하고 벌점 3점을 주겠다고 합니다. 복장 위반의 경우 벌점이 2점이므로, 학교가 이렇게 협박조로 나오면 학생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그러한 비합리적 규칙이 규정에 오르는 것을 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례에서 실제로 그렇게 규정이 개정되진 않았지만, 교복 위 사복 외투 착용은 아직도 한정적인 경우 벌점 부과 대상입니다.

그리하여 이 "지시불이행" 항목 때문에 사실 학교생활규정에 올라와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소위 "불문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생긴 규정으로는 자습 시간에는 무조건 방문을 열어놔야 하고, 작년에는 갑자기 교장선생님이 "생수 반입 금지"를 선언해, 학교 식수대에서 물을 먹지 않고 생수를 구입해 먹으면 처벌하고 반송했습니다. 한마디로, 규정에 올라와 있지 않다고 해서 학생들이 자유로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 지시불이행 항목이 학생생활 모든 면을 총괄해 규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칙]

제63조 (규정위반 처벌) 규정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번	규정 위반 행위	처벌 내용
19	<u>국기와 조국에 대해 불손한 경우</u>	벌점 5점, 정도에 따라 학교내외봉사, 전문지도, 가정학습(사고결), 퇴학
20	교우 수준을 넘은 이성교제	정도에 따라 학교내외봉사, 전문지도, 가정학습(사고결), 기숙사퇴사, 퇴학
21	음주 및 흡연(술과 담배를 소지한 경우도 해당됨)	정도에 따라 학교내외봉사, 전문지도, 가정학습(사고결), 퇴학
22	교사의 교육 목적을 위한 지시 사항에 불응한 경우 <u>교사에게 불손한 태도를 취한 경우</u>	벌점 3점, 정도에 따라 학교내외봉사, 전문지도, 가정학습(사고결), 퇴학

<학교비판 금지>

■ 천안 B고등학교

[공모내용]

SNS상에서 학교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학생부 선생님이 방송조회 때 구두로 얘기해서 사진 같은 건 없는데 제가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실제로 제가 블로그에 학교 비판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 교무실에 끌려가서 '인성쓰레기'니 '이 학교는 뭐하러 다니니'하는 폭언을 들었습니다.

[학칙]

**【사회봉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 「사회봉사」에 처할 수 있다.  
**12.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행사에 출품 또는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에 처할 수 있다.  
**12.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집회참여 금지〉

■ 전북 전주 S고등학교

[공모내용]

이상한게 많고, 솔직히 뭐 해보려고 해도 이런 걸로 다 걸거 같아요.  
 몇 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학교장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집회나 결사에도 가담해서는 안 된다."**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학생이 국외를 여행(연휴 및 방학 기간)하고자 할 때에는 국외 여행자신고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와 학생부에 신고하여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한다."**

[학칙]

<b>집단 행위</b>	45	불법집회 또는 불법동아리 활동을 한 학생	0	0				
	46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행사에 출품, 출연한 학생	0					
	47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0	0				
	48	동맹휴학을 선도, 주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0	0	0	0	

### 〈정치참여 금지〉

■ 부산 A고등학교

[공모내용]

**퇴학조항 : 정치활동에 참여했을 경우(예시: 데모 등)**  
 시민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참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이자 인권에 포함되는 조항이다. 데모를 포함한 참정권의 행사가 퇴학 조항이 되는 것에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이기 이전에 국민이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자하는 개인을 퇴학으로 징계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일까.

[학칙]

구분	항	행위 내용	학생	학생징계					부모	
			훈육 훈계	교 내 봉사	사 회 봉사	특 별 교육	출 석 정 지	퇴 학 처 분	상 담	서 약 서
집단	69	불법 집회 또는 불량 동아리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	○	○			○	○
	70	허가 없이 동아리를 조직 운영하여 교칙을 문란하게 한 학생		○	○	○	○	○	○	○
	71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회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
	72	학생을 선동하여 학교교칙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	○	○	○
	73	동맹휴학을 선동, 주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	○	○	○	○	○	○
	74	<b>정치에 관여한 행위 혹은 학생 신분에 어긋난 행동을 한 학생</b>		○	○	○	○	○	○	○

2. 단속 및 처벌

〈소지품 검사〉

■ 대전 B중학교

[공모내용]

담요 두르거나 눈에만 띄어도 뺏기고 바로 벌점3점인가 5점이구요, 비오는 날 여학생들 앞머리 공들여서 말아온 거 다 풀어져서 수업시간도 아니고 쉬는시간 그때만 구르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된다며 바로 벌점 5점. 이제는 학교 올 때 고데기하고 오지말라네요...ㅋㅋ  
 소지품검사 이거는 정말 할짓이아니라고봅니다..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라고 봐요 선크림마저 뺏어갑니다.. 립밤마저도요. 걸리면 벌점5점 한방입니다ㅋ...



정말 학교를 다니라는건지 뭔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들은 즐기는거 같기도 하구요ㄷ

소지품 검사할 때 가슴 만지고 엉덩이, 허벅지까지 검사하는 건 기본.  
치마 늘리려서 늘렸는데도 계속 트집 잡으시고 단추도 떼어버리시고...  
소지품 검사 때 뺏긴 게 한두개가 아니에요ㄷ 진짜 힘들어요

수업시간에 수업을 듣는 중 영문도 모른 채 갑작스런 소지품검사를 받았습니다  
한번도 아니고 두번씩이나 수업을 방해하고 수업흐름을 망치니 기분이 몹시 나쁩니다

또한 아침 등교시간에 교문 앞에 줄을 길게 세워놓고 검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덕분에 비 오는 날인데 교실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비를 맞으면서 용의검사를 받았습니다. 교문앞에서.  
더 어이없는건 왜 셔츠를 내리냐며 강하게 셔츠를 잡아올렸는데 무슨 맥살 잡히는 것 같았습니다...  
좀 있으면 졸업인데도 치마가 무릎을 전부 덮지 않으면 치마 천을 붙여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화장을 한다고 수업시간에 불쑥 들어와서 소지품검사를 합니다. 수업중인 선생님들께 양해도 구하지 않았더군요...

대전 B중학교에 대한 제보입니다. 저희 중학교만한 규정은 없을 것입니다. 일단 저희중의 두발검사는 매달 초입니다. 3월에 미리 공지하였으므로 머리를 안 잘라오면 벌점 5점이 바로 들어갑니다.  
또한 두달에 한번꼴로 소지품검사를 하여 벌점을 갯수당 1점씩 줍니다. 또한 숨겼다가 걸릴시에는 가중처벌로 벌점 5점이 들어갑니다.  
저희학교 머리규정을 말해드리겠습니다. 머리길이는 1학년은 카라에 닿지 않아야 하며 2학년은 카라 중간 3학년은 카라 끝이라고 선생님들께서 말씀은 하십니다. 그러나 2,3학년 모두 카라 중간 혹은 카라에 닿을 듯 말듯 정도만 허용합니다. 제 친구는 머리를 턱선보다 짧았는데도 목이 짧다는 이유로 다시 잘라오게 하여 2학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귀밑 3cm로 잘랐습니다.  
담요 덮고 다니면 벌점은 물론 외투를 입었을 시 벌점이 들어갑니다. 비오는 날 양말을 안 신고 다녀도 선생님께 꾸중 및 벌점을 받습니다. 벌점 10점부터 10점 단위로 징계조치가 취해지며 점심시간마다 교내봉사를 하게됩니다. 벌점을 지우려면 상점이 필요한데 이 상점은 수업시간에 시험 봐서 1등을 한 아이에게만 주어지다보니 컨닝을 하는 학생들도 발생하여 친구간의 믿음이 사라지는 2차 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만 안 들어도 벌점을 준다고 협박하며 아이들의 인권

또한 존중하지 않는 저희 학교를 신고합니다

[학칙]

소지품 검사 근거 규정 없음

### 〈기숙사 검사〉

■ 전남 화순 N고등학교

[공모내용]

기숙학교이고 전교생의 과반 수 이상이 기숙사에 머물고 있다는 점 미리 밝힙니다. 제보된 학교들과 규정이 비슷하지만 제보드릴게요.

명찰이 없을 때, 동복마의를 안입고 등교했을 때, 밖에서 가디건을 걸쳤을 때(4계절), 여자 머리길이 30cm가 넘을 때(a4이용해서 측정-세로길이), 교실에서 겨울에 두꺼운 옷을 껴입었을 때, 교실에서 체육복 상의를 걸치고 있었을 때, 핸드폰 소지하고 있을 때, 주말에 외출할 때 교복을 반드시 입고 나가야 함, 주말자습에 다른 편한 복장 입었을 때(기숙학교라 주5일제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나와서 의무자습하며 교복 강제로 입습니다.), 머리를 안 묶고 있었을 때 등.

**제일 당황스럽고 어이없었던 건 기숙사에 선생님들께서 들어가셔서 학생들 옷장을 뒤진 점입니다.** 그래서 고데기, 핸드폰, 화장품 등을 압수하셨는데, 사실 고데기는 화재 위험상 선생님들께서 걱정스러워하시는 걸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숙학교다보니 2주 동안 집에 못가고, 타지에서 온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과 연락은 필수입니다. 그런데도 그 연락수단을 막으려 학생들 옷, 물건, 속옷, 침대 구석구석 등을 들춰가며 압수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왜 뒤지냐고 항의하자 오히려 뻔뻔하게 나온 선생님들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기숙사는 또 하나의 집이고 나의 공간인데 권위를 이용해서 학생들 물건을 뒤지는 것 자체가 학생들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급식실 이동 통로도 남학생들은 이용 불가능하고, 이성교제도 불가능.

사실 제가 제일 알리고 싶은 것은 기숙사 학생들 옷장을 싹 뒤진 점입니다. **이 부분은 꼭 알려졌으면 좋겠네요. 허위사실 아니니 꼭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학칙]

제37조의2 (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 ① 학생은 음란물, 흡연 관련물, 주류, 향 정신성 의약품, 흡기류 등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을 소지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습 및 학내 생활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2013.02.18. 신설)

## 〈CCTV감시〉

### ■ 경기 동두천 A고등학교

#### [공모내용]

**안녕하세요, 동두천 A고등학교 재학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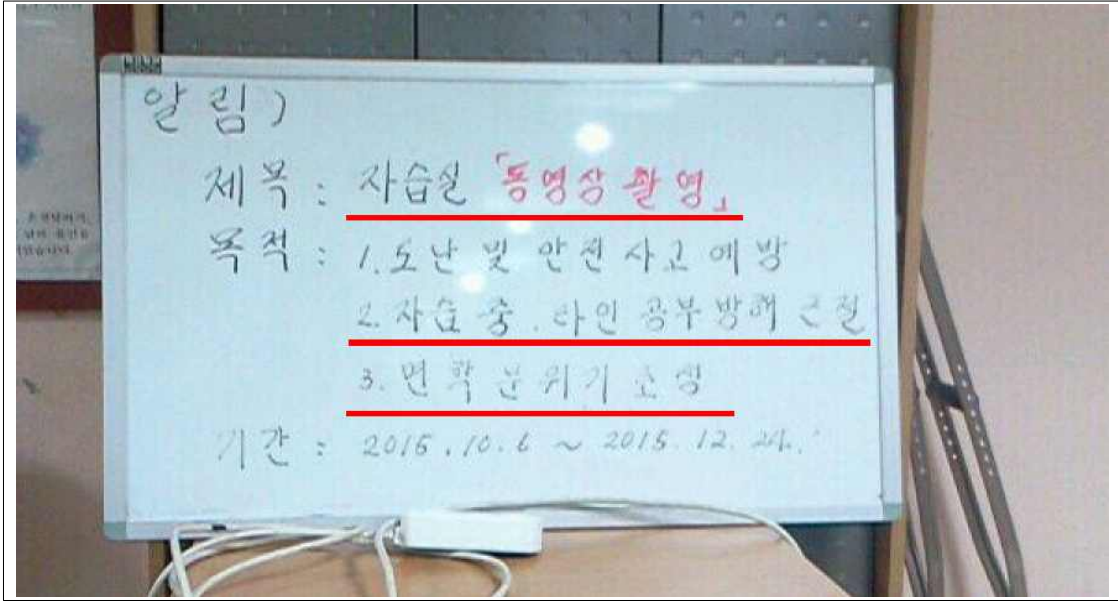
**최근 학교 자습실에 터무니 없는 공지가 있어 제보합니다.**

**이 공지는 학교 측에서 학생 측 협의나 동의 없이 만든 것이며, 통보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두천 A고는 교육청에 거짓말 치고 모든 학생들을 밤 11시 30분 까지 강제로 자습실에 있게 했다가 학생 민원에 의해 10시 까지 자습하는 선택권을 준 학교입니다. 여전히 학생들에게는 오전 7:50-8:40과 19:30-22:00 자습에 선택권이 없습니다.

**강제로 자습하는 것도 억울한데, 감시까지 받아가며 공부해야 하나요?**

#### [cctv 설치 통보 사진]



■ 전남 보성 B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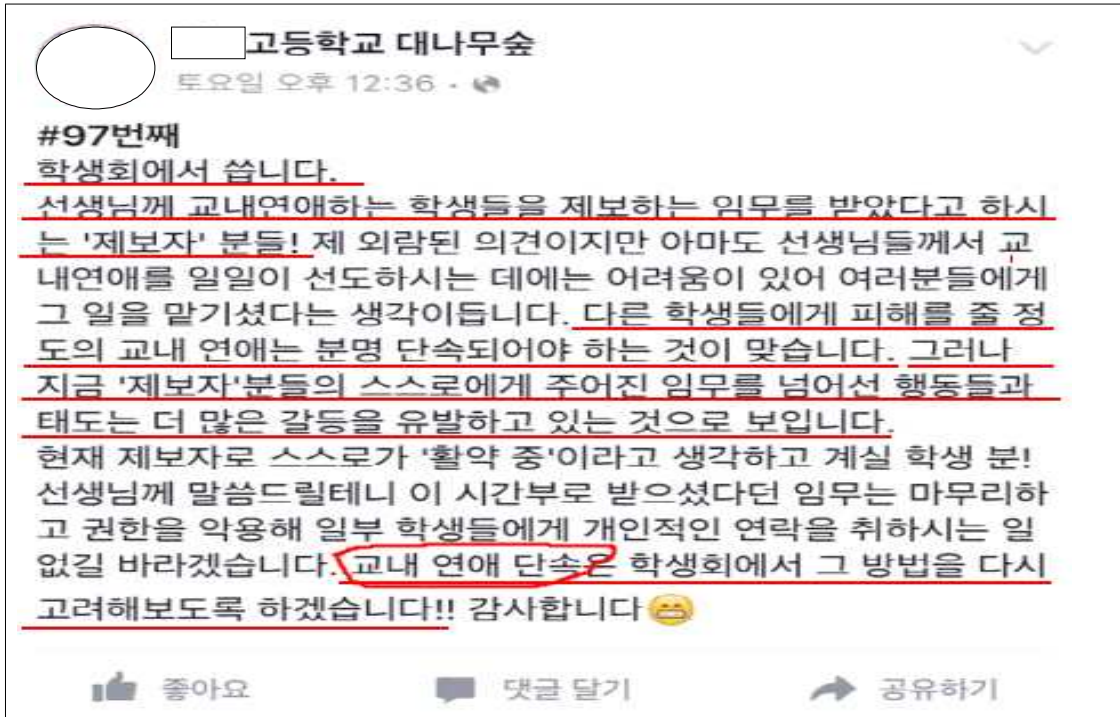
[공모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B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에는 '교내 연애 금지'라는 항목의 교칙이 있습니다. 교내연애가 발각되면 교내 모든 수상에서 제외되고 교내 봉사 등의 처벌이 있습니다. 교내연애가 보통 어떻게 적발되나 하면은 일 년에 몇 번 학생들에게 종이를 돌려 적으라 합니다. 또는 선생님들 눈에 직접 같이 있는걸 들키거나 해서 적발이 되는데 최근 들어 학생들 중 몇 명의 학생을 교내연애를 찾아오고 적어 오게하여 상점을 주거나 하는 특혜를 주면서 교내연애를 하는 학생들에게 익명채팅(에스크, 오픈채팅)을 통해 자신들의 권한을 악용하며 협박하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일부 학생에게 임무를 부여하여 그 학생들을 통해 연애하는 학생들의 명단을 수시로 받고 있는 듯합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일부 학생들의 익명채팅을 통해 협박 아닌 협박인 말을 하여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처벌중 제일 심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한 남여 학생이 손을 잡고 있는 걸 기숙사 시시티브로 적발이 되어 두 학생은 한달 퇴사와 함께 퇴학의 협박을 받았습니다가 그 여학생은 화순에서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한달동안 집에서 다녀야 했습니다.

교내 연애를 금지하는 학교. 이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아닌지 싶습니다

[B고등학교 대나무숲 페이스북]



## 〈체벌〉

### ■ 전북 전주 S고등학교

#### [공모내용]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체벌이 금지됐는데도 체벌을 허용하는 학칙이 있습니다.

#### [학칙]

제57조 **〔체벌의 허용〕** 체벌은 교육상 필요하고 다른 수단으로는 교정에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체벌한다.

- 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현저히 침해되며 질서 유지가 어려울 때
- ② 학습태도가 불성실, 태만하여 교사의 반복 지도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을 경우
- ③ 학생의 신분으로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 ④ 다른 학생을 의도적으로 괴롭히는 경우
- ⑤ 기타 체벌을 가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제주 J고등학교

**[공모내용]**

전자기기 소지 시 최초1회 15일 압수, 그 이후부터는 30일 압수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항상 30일 압수합니다!  
 짧은 스포츠형 머리라 하고 그때그때 기준이 다르고, 어겼을 경우 맞습니다  
 기준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써놨으면 좋겠고 학칙에 쓰진대로 이행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학칙 제정 시 학생이 참여하여 교사, 학부모와 대등한 위치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 **울산 H고등학교**

**[공모내용]**

고3한테만 적용  
 점심시간 운동금지, 독서금지(도서관에서 책 대출목록 확인 후 3학년의 대출기록 확인시 체벌)  
체벌은 앞으로 나란히, 옆드려뻗쳐, 옆드려뻗쳐서 엉덩이 맞기, 서서 엉덩이 맞기 등 정해진 것 없이 선생님 스타일에 맞춰 변형  
 학교의 공식적인 규칙이 아닌 단지 선생님께서 속된말로 끝보기 싫다고 만든 규칙

**[학칙]**

제 68 조(징계의 기준)

구분	항목	내 용	훈계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지정	퇴학처분
<b>예 절</b>	1	성행이 불량하여 관계 기관이나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전화 기타의 방법으로 통보되어 확인된 학생		✓	✓	✓		
	2	기본적인 예의범절이 바르지 못한 학생	✓	✓				



**<단체기합>**

■ **울산 Y고등학교**


**[공모내용]**

외투 착용시 단체기합, 한명만 잘못해도 연대책임 또는 단체기합  
 영문도 모르고 체육관에 가서 체벌 받거나 자습시간에 공부하다가 책상 위에서 한  
 시간 동안 밥도 못 쳐먹고 무릎 꿇고 있다 보면 옆에 있는 게 사람이던, 사물이던  
 간에 다 때려 뿌쉬 버리고 싶어요.  
 아무 잘못 없는데 혼나는 기분은 말로 표현 못합니다. 진짜

[학칙]

## 19. 학생자율 생활평점제 규정



**제1조(목적)**  
 상점으로 학생 선행을 칭찬하고 장려하며, 벌점으로 체벌을 금지하여 학생  
 의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인성교육을 실시한다.

**제4조(벌점부과 및 시행절차)**  
 1) 벌점부과 및 시행절차  
 ① 벌점 부과 대상 학생을 적발하면 반드시 본인 확인을 한 다음 (담임 확  
 인 후 사실과 다를 경우 벌점 기타 32항 3점 추가 부여) 벌점 기준표  
<별첨 2>의 벌점 규정 위반 항목을 학생에게 인지시키고, 상·벌점 부과  
요청서 <별첨 3>를 작성하여 생활지도계로 제출한다.

### 〈상·벌점제〉

■ 대구 K중학교

[공모내용]

1. 고데기 금지, 단발인 사람도 볼륨매직 금지
  2. 여름에는 흰양말, 겨울에는 검은양말인데 복숭아빠가 보이면 안돼고 발목양말을 신어야함
  3. 어깨에 머리카락이 닿는사람은 머리를 묶어야함 (3년전까지는 귀밑 3센치로 잘라야했음)
  4. 겨울에 수업할때도 외투를 입고있으면 안됨
  5. 하복, 춘추복 위에 외투를 입으면 안됨
  6. 학교수업을 마쳐도 학교안에서 휴대폰을 하면 뺏김 (부모님과 전화하는것도 학

교 밖에서 해야함)

7. 전일제나 학교밖으로 체험활동을 하러갈때 무조건 긴바지, 긴팔을 입어야함 (여름에도)
8. 강제 방과후와 강제 방학 중 보충수업을 함 (중학생인데도 방학이 2주밖에 없어요)
9. 겨울에 동복 입을때 마이 단추를 항상 다 잠구고 다녀야함
10. 교복 셔츠안에는 항상 흰색 티만 입어야함
11. 담요를 덮으면 안됨
12. 썬크림은 무색만 됨
13. 치마는 무릎밑이어야하고 무릎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안됨
14. 손톱은 항상 자르고 다녀야하고 손톱에 영양제도 바르면 안됨
15. 학교에 매점이 있는데도 먹을것을 들고 돌아다니면 안됨
16. 발목까지 오는 신발을 신으면 안됨
17. 체육복입고 등교, 하교 못함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학교 가기도 싫어요**

[학칙]

번호	별점 내용	점수
1	신주머니, 실내화 미 지참 및 실내에서 실외화, 실외에서 실내화를 착용	1
2	교내/외 술,담배 소지 및 음주 흡연	5
3	학교 복장, 두발 및 규정 위반(파마, 염색, 톨, 고데기 사용, 화장, 썬클렌즈, 귀걸이, 피어싱, 목걸이, 팔찌, 발찌 등)	1
4	교내에서 휴대폰 소지 했을 경우	2
5	급식 때 새치기 행위, 고성, 폭언 등	1
6	급식 때 식판 및 음식물로 장난을 하는 행위	1
7	수업 시간 태도 불량 및 교내에서 선생님의 지도에 불량스런 태도를 지닌 학생	1

라. 기대되는 효과

- 1) 최종 징계를 받기 전까지 학생의 각종 잘못된 언행을 수시로 교정할 수 있다.
- 2) 체벌을 통한 부작용을 차단하고 학교와 학생 간의 신뢰감을 회복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학교생활 선도가 가능하다.
- 3)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하는 규정이므로 학생들이 교칙을 제대로 준수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별점제로 학생 생활 자세를 자율적으로 교정할 수 있다.



■ 대전 B 중학교

[공모내용]

저희중의 두발 검사는 매달 초입니다. 3월에 미리 공지하였으므로 머리를 안 잘라 오면 벌점 5점이 바로 들어갑니다.  
 또한 두 달에 한번꼴로 소지품검사를 하여 벌점을 갓수당 1점씩 줍니다 또한 숨겼다가 걸릴시에는 가중처벌로 벌점 5점이 들어갑니다.  
 벌점 10점부터 10점 단위로 징계조치가 취해지며 점심시간마다 교내봉사를 하게 됩니다. 벌점을 지우려면 상점이 필요한데 이 상점은 수업시간에 시험박서 1등을 한 아이에게만 주어지다보니 컨닝을 하는 학생들도 발생하여 친구간의 믿음이 사라지는 2차 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만 안들어도 벌점을 준다고 협박하며 아이들의 인권 또한 존중하지 않는 저희학교를 신고합니다

[학칙]

제73조(그린마일리지 상점 기준 표)

수상 실적	1	개근상 수상	
	2	<u>학력우수상 수상[과목별]</u>	
	3	학교장 표창[봉사, 모범, 선행, 효행 등]	
	4	<u>교육청관련상[봉사, 모범, 선행, 효행 등]</u>	
	5	학교장 표창[단체]	
	6	기관장 표창[구청, 광역시 단위]	
	7	장관급 표창	

제74조(그린마일리지 벌점 기준 표)

학습 활동	1	수업시작 후 늦게 입실	1	
	2	<u>수업 중 잠못된 행동[과제물 불이행, 수업준비 태만 수업태도 불량, 타교과 공부, 잡담, 배회, 인원점검 대신 대답, 음식물 섭취 등 1회 당]</u>	1	
	3	수업 중 통신기구 사용[핸드폰 등]	2	
	4	<u>수업거부[만화, 동영상 등 시청 포함]</u>	2	
	5	<u>수업 중 정당한 교사의 지시 불이행</u>	4	

■ 전북 전주 S고등학교

[공모내용]

저희 동네에 전주 S고... 저는 지금 다니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전북에서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돼서 다 두발자유가 된 줄 알지만, 여전히 두발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도 학생인권조례에선 소지할 수 있잖습니까. 다 걷어갑니다 "전자 기기(휴대 전화 등)는 조회시간에 수거하여 교무업무지원센터에 보관하며 종례 시간까지 소지를 금한다."

**게다가 휴대전화 쓰는걸 다른 친구가 신고하면 상점을 줍니다... 치사하죠**

[학칙]

♣ 상점 기준표 ♣			
영역	번호	상점 내용	점수
환경미화 및 봉사활동	1	학교 활동에 솔선수범함	3
	2	장애학생 도우미 활동에 참여함	3
	3	교외봉사활동에 25시간 이상 참여함	10
준법신고 활동	4	비품, 공공기물의 고장·훼손 신고	5
	5	<u>전자기기 무단 사용 신고</u>	3
	6	흡연 또는 음주 행위 신고	10
	7	학생 안전사고 신고	5
	8	학교폭력 관련 신고	10
	9	일반 분실물 습득 신고	2
	10	지갑 또는 현금 5만원 미만 습득 신고	5
	11	귀중품 또는 현금 5만원 이상 습득 신고	10

〈상점자 방과후학교 우선선택권 등 부여〉

■ 서울 K고등학교

[공모내용]

**7. 성적 상위 학생만 사용 가능한 특별 야자실 운영**

—상위 20% 내의 학생 중 담당 교사의 입맛에 맞는 학생들을 뽑아 별도의 야자실을 사용하게 합니다. 이 야자실을 쓰는 학생들은 모두 3번의 대상자가 됩니다. 일반 야자실과는 달리 개인 사물함과 온돌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책상과 의

자도 일반 야자실보다는 고급입니다.

[학칙사진]

참 고	1	※ <u>별점이 없는 다상점자에 대한 혜택.</u> <u>방과 후 학교 우선 선택권, 야간자율학습 우선권, 해외연수 우선권, 봉사활동 참여우선권 등을 주고 상점</u> <u>을 많이 취득한 학생(20점 이상)에게 표창장(노력상)을 부여함.</u>		
	2	▶ <u>상점 : 학교에서 정한 상점 기준표에 의거하여 전교사가 부여하며 상점누계 10점→15점(매월) 이상</u> <u>대상자는 교내 표창 우선 대상자 지정(부상으로 문화(도서)상품권(1장) 등을 줄 수 있음)</u>		
	3	▶ <u>상별전제에 따른 표창 및 훈육내용은 생활지도부에 기득할 수 있음.</u>		

<별점자 반성문, 서약서 쓰기>

■ 광주 S중학교

[공모내용]

애매하고 자의적인 규정들.  
"예절" 규정이라는데 있었어요. 교사랑 학교에 오는 손님에게 예의바르게 굴라는 거였는데, 교사마다 예의바름의 기준이 다 달라요.

15점, 20점 이런 식으로 쌓일 때마다 담임교사-생활지도부장-교감 순으로 상담 받고 그때마다 반성문 써야 했어요.  
규칙도 애매모호하고 납득할 수 없는 것도 많은데, 규칙을 여러 날 안 지키면 항변할 기회도 없이 훈계 받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써야하는 거죠.

[학칙]

제 27 조 (징계 기준)벌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항	내 음	벌 의 내 용				
			훈 계	교내 봉사	사회 봉사	교육 연수	훈석 정지
제1조 예절	1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	※			
	2	용의가 단정치 못한 학생	※	※			
	3	언행이 불손한 학생	※	※			
	4	기타 학생다운 행동을 하지 않은 학생	※	※	※		
	5	품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		
	6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제 31 조 (징계 해제) 다음과 같이 징계를 해제한다.

1) 징계해제는 학생부장이 징계 기간이 만료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담임교사 및 진로 상담 교사의 협의하여 학교장에 그 해제를 건의한다.

2) 징계 해제 학생은 선도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해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 대전 C중학교

### [공모내용]

별점을 받으면 마음에도 없는 맹세를 하며 서약서를 써야 합니다.

### [서약서 사진]

☆ 나 \_\_\_\_\_는 선도위원회의 선도 처분을 성실히 하겠습니다.

☆ 나 \_\_\_\_\_는 상당 활동을 성실히 하겠습니다.

☆ 나 \_\_\_\_\_는 두발규정에 맞추어 이발을 하겠습니다.

☆ 나 \_\_\_\_\_는 복장규정에 맞추어 복장을 단정히 하겠습니다.

☆ 나 \_\_\_\_\_는 학교규정에 맞추어 등교를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 나 \_\_\_\_\_는 수업에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학교생활에 더욱 충실하여 기본생활습관을 지키는 물론, 학칙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약속하고, 이후 선도처분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거나 학교 교칙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가중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보호자의 확인으로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학칙]

#### 제4조 (상·별점 지도)

##### ⑤ 별점에 따른 단계별 지도

1. 매학기 합계 점수(별점에서 상점을 뺀 점수)가 10점단위를 넘어설 때 마다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지도한다.
2. 연간 총 누적점수는 학년말 생활기록부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다.
3. 별점에 따른 지도내용

단계	누계점수	지 도	내 용
1단계	10점	담임교사	반성문 3회 및 자율교내봉사활동 3시간 학부모 SMS 통보, 학부모 면담과 <b>서약서 작성</b>
2단계	20점	담임교사 학년부장	반성문 3회 및 자율교내봉사활동 6시간 학부모 SMS 통보, 학부모 면담과 <b>서약서 작성</b>
3단계	30점	담임교사 생활지도부	반성문 5회 및 자율교내봉사활동 10시간 학부모 SMS 통보, 학부모 면담과 <b>서약서 작성</b>
4단계	40점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선도 조치함(사회봉사)	
5단계	50점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선도 조치함(특별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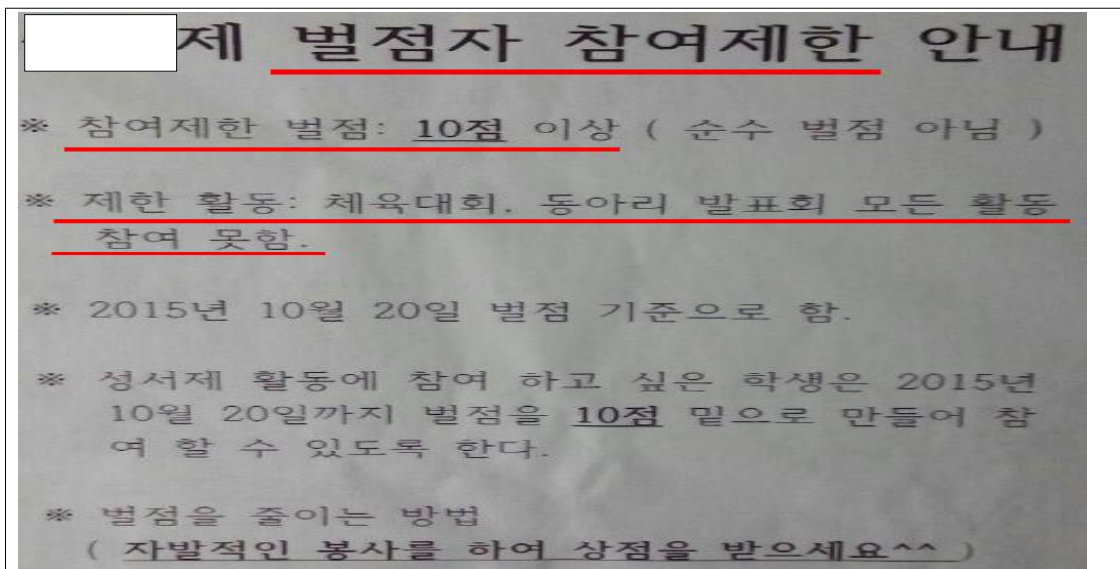
### 〈별점자 학교행사 참여 금지〉

#### ■ 서울 S중학교

##### [공모내용]

별점 10점 이상이면 축제, 체육대회 참여 금지.

##### [학칙사진]



■ 대전 B중학교

[공모내용]

이번 축제는 벌점이 단 1점만 있어도 참여 못하게 한다고 으름장을 내놓더니 하도 참여하는 학생이 없어서 10점 이하 벌점의 학생만 참여하라고 합니다ㅋㅋㅋㅋ  
ㅋ 아 진짜 웃겨서...  
여기에 말해서 달라지는게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리 학생들이 발버둥치고 이룬데 글 남겨도 항상 똑같은 반응....너무 답답해서 이렇게라도 말하고 갑니다...

〈벌점자 식사 금지〉

■ 대전 B중학교

[공모내용]

남녀공학학교인데 남녀 차별이 너무 심해서 여학생은 치마가 조금이라도 짧거나 화장(입술이나 썬크림포함)을 하였을 때 바로 선도를 연다고 협박을 하며 벌점은 정해진 바와 다르게 멋대로 벌점을 줍니다 ex. 점심시간에 체육복을 입거나, 화장을 조금이라도 했거나, 치마가 조금이라도 짧으면, 밥을 못 먹게 한다.

솔직히 인권이 너무 침해 되는 것 같고 학교에서는 사람대접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눈치받으면서 다니는게 학교인가요.

정해진 바와는 달리 벌점을 멋대로 주고 제 친구는 화장 한번으로 인해 벌점 26점을 받았습니다.

■ 부산 A고등학교

[공모내용]

-등학교 시 체육복 상의(자켓형태)를 입거나 들고 올 경우 벌점  
-머리를 묶지 않는 경우 지적을 받음(따로 징계의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급식실 출입을 제한함) 머리가 마르지 않아도, 묶지 않아도 짧아서 단정한 경우에도.

## 〈별점자 외출·외박 금지〉

### ■ 울산 A고등학교

#### [공모내용]

우선 이 학교는 기숙사 학교인데요, 별점이 쌓이게 되면 외출과 외박이 금지 됩니다. 별점은 기숙사생활에 관한 규정에 의해 생기고요.

예를 들면 기숙사 방의 쓰레기통을 매일 아침 비우지 않으면 1점, 이부자리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1점, 책상 정리가 안 되어있으면 1점, 이런 식입니다.

이 별점이 3점이 쌓이면 1주일 간의 외출과 외박이 금지 됩니다.

졸업한지 꽤 되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3점, 5점 등등의 기준으로 벌을 받고, 20~30점 정도 되면 기숙사에서 퇴출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5점은 2주 동안의 외출, 외박 금지였습니다.

1학년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외출허가증 없이 외출이 불가하고, 학원을 다니는 것도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평일에는 학교교문을 나설 수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외출의 기준이 학교 교문을 나서는 것이라, 학교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에 가는 것 또한 외출로 간주, 금지됩니다.

기숙사와 학교는 연결되어있어, 기숙사에서 학교로 바로 들어가 하루 일과를 보낸 후 점심시간 약간의 운동장돌기를 하는 것이 유일한 실외활동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1. 매일 쓰레기통을 비우지 않는 것에 대해 별점이 부과 된다는 점(음식물 반입 금지이므로 썩을 일도 없는데도, 정말 조금의 종이쓰레기 한 장 이라도 있으면 별점을 부과했습니다.)

2. 생활하며 생길 수 있는 자잘한 실수(쓰레기통,이부자리 정리등)로 외출과 외박이 금지 된다는 점입니다.

#### [학칙]

제31조(기타 비용의 징수)

1. 수익자 부담경비: 기숙사 식비 등 교육활동을 위한 수익자 부담경비는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제35조(기숙사 생활)**

학교장은 학생의 기숙사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은 기숙사 생활수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별점자 퇴학〉**

■ 대전 D고등학교

[공모내용]

**머리를 군인처럼 뽀뽀 깎지 않으면 별점입니다...**

**특히 일주일동안 깎지 않으면 퇴학까지.....**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저희 학교만 머리가 군인머리&삭발이예요 ㅠ

[학칙]

두발 및 용의 복장	26	두발·용의규정 등 위반(과마, 염색, 귀걸이, 피어싱 등)	3
	27	명찰, 교복, 복장, 신발, 가방 착용 상태 불량	1

**58조(상·별점제의 운영)**

상·별점의 부여(상·별점카드)와 입력은 온라인(그린마일리지 디지털시스템)으로 지도한 교사가 직접 기록, 입력하며 카드는 각 학년 생활지도계로 제출하고, 각 학년 생활지도계에서는 이를 수납하여 1개월에 한 번 생활지도부로 제출한다. 전체적인 관리 및 통계는 생활지도부 담당교사가 1개월에 한 번 합산하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별점에 따른 단계별 지도는 다음과 같다.

지도 단계	누계 점수	지 도	내 용	비 고	
1단계	1-9점	담임	상담지도	.	.
2단계	10-19점	담임	교내봉사 10일 이하, 반성문, 서약서 작성	.	학부모 면담
3단계	20-29점	담임, 학년 생활지도부	사회봉사 10일 이하, 반성문, 서약서 작성	학생선도 위원회개최	"
4단계	30-39점	담임, 학년 생활지도부	특별교육 10일 이하, 반성문, 서약서 작성	학생선도 위원회개최	"
5단계	40점 이상	학생징계규정에 의거하여 징계		학생선도 위원회개최	학생생활 기록부기록



교내봉사활동은 휴식 시간(아침등교 시간, 점심·저녁 식사 포함) 및 방과 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지도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의 협조 아래 일과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2호의 조치를 거부한 학생은 1회당 1단계씩 지도 내용을 강화하고 3회 이상 거부 시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별점이 40점을 초과할 경우 학생징계기준에 의거하여 생활지도부에서 협의, 징계 회부 및 학생지도 방안 등을 결정한다.

⑥ 학생선도위원회에서 결정된 징계 지도 후 별점 차감은 지도 단계별 상한 점수로 하되 차감되는 점수는 현재 별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출석정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49점까지 차감할 수 있다.

⑦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에서 통계된 누계점수는 학년 말 학생생활기록부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다.

**⑧ 당일 시정이 곤란한 사안은 중복하여 별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예 두발, 복장 등)**

⑨ 동일 일자에 동일 항목으로 중복하여 별점을 부여하지 않고, 한 학생에게 1일 10점 이상의 별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 학생징계 기준표

항	내 용	학교 내의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퇴학 처분
9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 〈압수, 물품 폐기〉

#### ■ 울산 M고등학교

#### [공모내용]

일의 시작은 선생님께서, 학생부에서 겉옷, 외투를 입지 못하게 합니다. 입지 못하게 하시고 학교체육복을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것을 압수당하는 것이 아니라 별점을 받고, 옷은 폐기처분이 됩니다. 이것

**은 잘못된 일 아닌가요?**

벌점과 그에 해당하는 벌은 받을지언정 폐기처분이 되는것은 본인의 옷도 아니고 타인의 옷을 압수하여 폐기처분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서 이제는 아예 폐기처분할꺼니까 눈에 띄기만 해라 라는 식의 압박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시시때때로요.. 솔직히 야자 끝나고 밤늦게 집으로 가려고 하면 정말 축섭니다.. 외투를 꼭 들고 다녀야 하구요..

**[학칙]**

표 #2 벌점기준			
두발, 용의 복장	7	두발 또는 용의규정 위반(파마, 염색, 귀걸이, 피어싱 등)	6
	8	교복을 임의로 변형시킨 학생, 사복 등하교	5
	9	기타 복장규정 위반 학생	4

**■ 서울 Y중학교**

**[공모내용]**

화장을 해서 벌점을 받았었는데, 화장품통까지 쓰레기통에 버리고,  
치마 개조를 해서 걸렸는데 니가 다리가 얇냐고, 다른 애들 다 있는데, 니 다리 두껍다고, 아냐고 니 다리 두꺼운 거 이러면서 인신공격을 하고,  
칼로 치마를 뜯었다고 친구들 보고 '저와 놀지 말라'며 '저랑 놀아서 그런 거냐'고 하면서 친구들에게 말해서 친구들과 멀어지게 될까 무서웠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우리 반에서 애들 다 지각을 했는데 저희 엄마한테만 전화하고 학교에 오라고 했다.

**<감지 쓰기>**

**■ 경기 고양 J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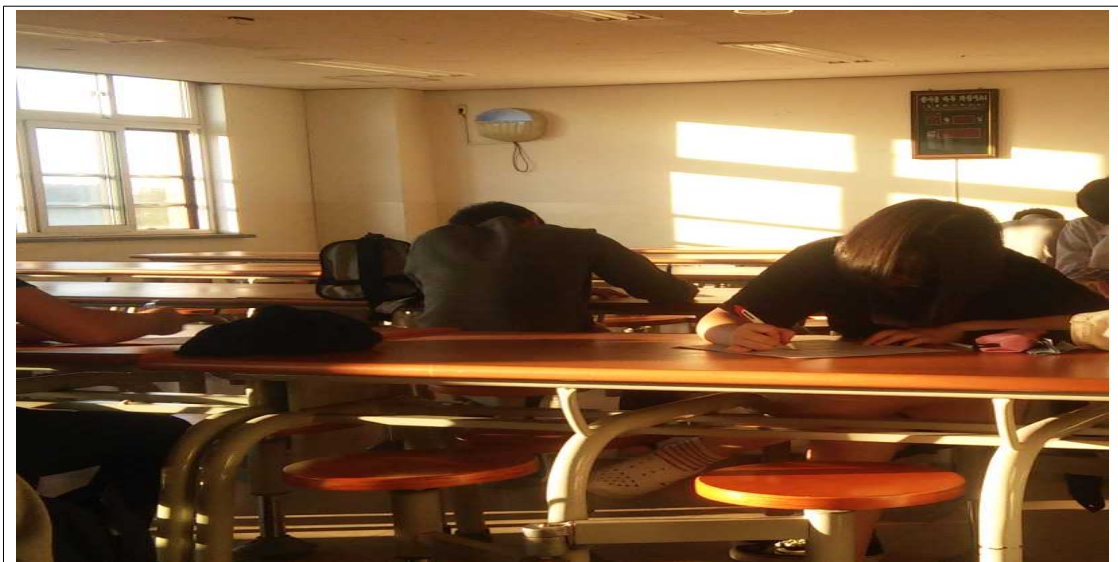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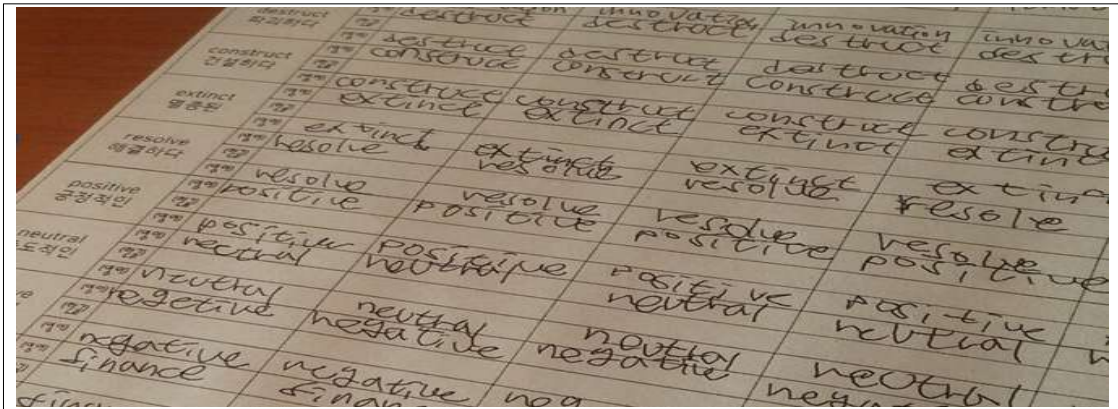
**[공모내용]**

경기도권 학교 학생인데요. 상벌점제 폐지 이후 성찰교실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장, 치마, 지각 등이 걸리면 방과후에 남아 한시간동안 감지를 시킵니다 ㅠㅠ 근처 학교에서도 이미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다섯 번 불참하면

선도위원회에 회부되는데 이것도 참 웃긴 게 연속 5번 불참이 아니라 누적 5번 불참이면 무조건이네요

성찰교실을 하다보면 . 내가 왜 원하지도 않는 공간에서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하고 있는지... 내 삶은 어디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한 학생부 선생님께서는 입시체제 유지를 위해 강압과 통제는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하네요 저한테... 입시만 중요하고 인간답게 살 권리는 안 중요한지.. 왜 나는 여기서 잘못됐다는 말 한 번 못하고 사는지... ㅠㅠㅠㅠㅠㅠㅠㅠ ㄹ0알 스스로가 싫어지네여... 뭘 하면 좋을까요...

[방과후 감지 쓰는 학생 사진]



[학칙]

제3절 성찰교실 운영  
제67조 【운영목적】

- ① 상벌정제 폐지에 따른 대체 프로그램으로 성찰교실을 운영한다.
- ② 규정과 약속이 지켜지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한다.
- ③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협력적·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한 민주적 학교공동체를 구축한다.
- ④ 학교규칙 준수 문화 조성을 통한 기본생활습관을 정착한다.

**제68조 【운영방침】**

- ① 학생 선도 규정 중 ‘훈계’에 해당되는 사항을 지도할 때 적용한다.
- ② 교내·외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기본생활 습관을 정착한다.
- ③ 학생 스스로 자성·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 ④ 적발에 따른 벌 부과보다는 체벌을 대체하는 학생지도에 역점을 두며 상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 ⑤ 지도대상학생은 당일 성찰교실에 참여해야 한다. 단, 경·조사로 인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다음 날로 할 수 있다.

**제69조 【대상자 선정 및 운영】**

- ① 학생인권부의 아침 등교지도시 적발학생과 전교사의 일과 중 적발학생이 그 대상이다.
- ② 성찰교실 담당 교사는 지도대상 학생을 담임교사에게 통보하여 지도 교육을 받게 한다.
- ③ 성찰교실 운영시간은 방과 후 1시간이며, 연장도 가능하다.
- ④ 성찰지는 과제중심활동이나 학습자료(국어, 한자, 영어 등)로 주로 구성한다.
- ⑤ 성찰교실 불참 일수만큼 성찰교실이 추가되며, 5회 불참자부터는 선도위원회에 회부되어 선도 처분을 받는다.
- ⑥ 대상자 선정 시 같은 날 동일 학생에게 같은 이유로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 ⑦ 성찰교실 무참여 학생은 각종 모범학생 추천 및 생활기록부 작성 시 참고한다.

**제70조 【지도 항목】**

구분	항 목	지도방법
근태	1. 8시 50분 ~ 9시 10분 등교	성찰교실
용의 복장	2. 교복 미착용, 교복 변형	
	3. 염색, 파마한 경우	
	4. 귀고리, 칼라렌즈, 피어싱을 한 경우	
	5. 색조 화장한 경우	
	6. 학생신문에 어울리지 않는 가방 소지, 책가방 미소지	
	7. 실내에서 실외화를 신거나, 실외에서 실내화를 신는 경우	
	8.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고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소지하다가 1회 적발되었을 경우	

**제71조 【이의신청】**

학생이 지도교사로부터 성찰교실 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학생인권부에 이의내용을 서면 또는 구두로 전달하여야 하며, 학생인권부는 이의신청에 대

한 내용을 심사하고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심사결과는 이의신청을 한 학생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제72조 【기타 사안】**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관련된 사항은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 3. 학칙제개정시 학생 참여 배제

#### 〈이의제기 금지〉

##### ■ 서울 S고등학교

##### [공모내용]

자율학습실 규정입니다. **관리교사에게 처벌받아도 이의제기가 불가능하고**, 이동이나 모든 행위를 통제합니다. 이성 간 대화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사소한 부탁도 안되고요.

면학분위기 조성이란 미끼를 앞세워 교사가 학생을 억제하는데 일조하는 조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업시간 이동까진 불만 했는데, 이성간 닿는 행위 자체를 통제하며 처벌에 대한 이의가 불가능하단 점에서 많이 불공평하네요. **독재정권도 심판 청구는 가능했는데 민주교육을 가르친다는 학교가 이 수준이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 [자율학습실 운영규정 사진]

### 2. 벌점에 의한 퇴출제도 실시

순	내 용	벌점
1	이동 시간이 아닌 시간에 이동 - 화장실, 전화 받기 등으로 중간에 나오는 경우 불허함	-2
2	잡담으로 타인의 공부를 방해하는 경우	-2
3	석식 시간 후 상학재에 늦게(18:40 이후) 들어오는 경우	-2
4	공부시간 중 휴대폰 사용	-2
5	사물함 위에 물건을 올려놓은 경우	-2
6	사물함 주변에 낙서 및 쓰레기 투기	-3
7	<u>이성간 불필요한 접촉(대화 등)</u>	-3
8	무단결석 1회 • 사유를 불문하고 월 3회 이상 결석하는 경우 '즉시 퇴출'	-2
9	무단조퇴 1회	-1
10	출석체크 시 자리에 없는 경우 • 출석체크는 수시로, 불시에 이루어짐	-1
11	<del>.....</del>	

- 벌점 부여는 관리교사의 고유 권한으로 적발 즉시 부여하며, 이의 제기를 받지 않음!
- 누적 벌점 10점이 되면 '즉시 퇴출'되며, 1달 후에 '입실대기자'가 될 수 있다.
- 벌점은 학년말까지 누적됨(누적 벌점 20점 이상이면 영구 퇴출)
- 계도 기간(6/3~7) 이후 엄격하게 적용됨!

## 〈개정요구 금지〉

### ■ 서울 D고등학교

#### [공모내용]

다름이 아니라 저희 학교에 비합리적이고 불량한 학칙을 제보하기 위해 글을 보냅니다.

첫번째로 저희 학교는 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교복을 입는 것에 제한을 둡니다. 하복과 춘추복 동복에 대해 혼용할 수 있는 기간을 1~2주 준 뒤 그 후에는 강제적으로 한 계절의 교복만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변동이 많고 예측할 수 없이 바뀌는 현재 날씨로 가을이라고 선선하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선생님들의 지도하에 따라 무조건 춘추복을 갖춰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춘추복을 입고 덥다며 냉방기를 사용하는 학급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상황입니다. 교복착용에 대한 제한이 없어진다면 학생들은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교복을 착용할 것이며 그리하면 이런 비합리적인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외투의 색 제한입니다.

저희학교 규정에 따르면 외투의 색은 원색과 형광색등의 요란한 색은 착용이 금지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에 대해 학생들의 반발이 심해지며 일부색깔은 허용해 주고 있지만 이 또한 분명히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등교지도시 날마다 그리고 지도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평가하고 같은 계열의 색이라도 명도차이에 따라 제한하는 부분이 달라 불편을 겪는 학생들이 매우 많습니다. 또 이러한 규제를 하는데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도 학생들에게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투의 색깔을 제한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이 학생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는 이유 없이 따라야 하는 교칙들이 존재하고 저희와 저희학교 선배들은 이를 따라왔습니다. 이번 주 동안 교감선생님과 학생부장선생님께 교복착용기간 제한을 없애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만약 제가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면 네가 대변할 이유도 없으며, 만약 이 의견이 제 의견이라면 그냥 교칙에 정해진 대로 따르기만 하라고 어쩔수 없는 일 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쩔수 없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유 없는 규칙에 저희들이 응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이러한 비합리적인 상황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 저희 때부터라도 정당한 교칙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보를 하기 전 한 선생님께 이러이러한 교칙은 비합리적이라고 제보할 것 이라고 미리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당장에 수능을 앞두고 졸업을 앞둔 학생이 왜 나서서 이러한 일을 하냐고 너에게 불이익이 갈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부당한 교칙을 바꾸려 하는 것이지 학생으로서 하지 말아야하는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공개되는 것은 상관이 없으나, 학교 측의 이미지에 대해 손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정보는 익명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와 저의 학우들은 이번기회를 발판삼아 부당한 교칙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하려는 일에 힘을 실어주실 수 있는지 요청해보고자 합니다.

## [학칙]

### 제13장 학칙 개정

제43조(학칙개정) ① 학칙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과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개정한다.

② 학교장은 학칙 (변경)인가서를 접수한 경우 학칙을 확정 . 공포한다.

■ 부산 S고등학교

[공모내용]

1.두발규정 : 옆머리와 뒷머리는 스포츠형으로 윗머리와 앞머리는 7cm가 넘지 않아야한다.

2.두발규정에 불통한 학생은 한주가 지날 때마다 벌점5점씩 받는다.

★★두발검사에 불통한 학생은 벌점상쇄가 불가능하다.(+벌점 15점이 넘으면 부모님 호출&징계 ☞ 생기부에 교칙준수가 매우불량하다고 기재됨)

\*1,2번 규정은 본래부터 학교에서 계속 되었고, 옛날 선배들부터 교칙을 바꾸자고 하였으나, 나이 많으신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의 반대로 아직까지 전해 내려옴. 학생회에서 두발규정 완화가 필요한 이유를 여러 가지 제시하였으나, 교장 선생님과 나이많은 선생님들은 이게 우리 학교의 전통이라는 말로 이유도 논리도 없는 소리만 함.

최근 길이 6cm에서 7cm로 늘렸지만 학생들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고작 1cm로 규정을 늘려 주었다고만 주장함.

학생들이 머리를 자르지 않고 벌점을 받고 상쇄를 해버리니까 두발검사 미통과는 상쇄를 못하게 한다는 규정을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통지하고 부모님 호출해서 징계를 주겠다고 협박함.

[학칙]

제6장 용의 복장

**제22조 (원칙) 학생다운 단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 (두발 및 용모) 두발검사 및 지도는 정기적으로 월 1회(1학기-매월 첫주 차, 2학기-매월 마지막 주차) 및 수시로 하며 규정 적용은 검사 시점으로 한다.

단, 시험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검사 기간을 연기 할 수 있다.

1. 앞머리 - 눈썹에 닿지 않을 것(길었을 때 7cm까지 허용)
2. 윗머리 - 길었을 때 7cm까지 허용한다
3. 뒷머리 - 옷깃에 닿지 않도록 단정하게 쳐올림
4. 옆머리 - 귀바퀴에 닿지 않도록 단정하게 쳐올림
5. 구레나룻 - 귀 볼 위까지 허용
6. 염색. 파마. 젤 등으로 변형을 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다.
7. 투블럭(투컷)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제28조 (보칙) 제6장(용의복장)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22조(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경우는 교무회의에서 관련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 〈동의서작성 강제〉

### ■ 충남 논산 D고등학교

#### [공모내용]

각종 정책에 대해 '동의'만 있는 일방적인 동의서 작성 요구

이를 토대로 여러가지 정책 정당화.

방과후학교 만족도 설문조사 조작.

중간 정도로 평가한 종이를 그대로 구겨서 버림

### Ⅲ. 관련 결정례 및 판례

(별지 참고)

# 발제1 : 공모 사례로 본 현 학칙의 문제점

발표 : 조영선

## 1. 들어가며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한다’는 말을 제일 많이 듣는다. 그것은 ‘선생님 말씀’이 학교의 법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체벌이 있었다. 선생님의 말을 법처럼 따르고, 안 지키면 체벌로 강제하면 되었기에 사실 교칙의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 교칙을 공개한 학교가 별로 없었는지도 모른다. 이것은 단순히 교칙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학칙의 근간이 되는 초중등교육법에 보면, 학생들에게 ‘무엇’이 ‘지도 가능’한가에 대한 언급은 없다.

1)징계와 관련된 규정만 있다. 그러다보니, 교실마다 지켜야할 것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

---

1) 제3장 학생과 교직원 [개정 2012.3.21]

제1절 학생 [개정 2012.3.21]

제17조 (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18조 (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18조의2 (재심청구)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2항에 따른 심사 절차와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18조의3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고, 학교별로 다르기도 했다. 그리고, 이것까지 규제해야하나 싶은 것도 있었다. 그런 규제에 대한 학생들의 끈질긴 저항으로 만들어진 것이 학생인권조례이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대부분 '선생님말씀'이 여전히 법이지만, 이 정도는 건드리면 안 된다는 제한이 생겼다. 그것을 보수는 교권침해라고 불렀다. 중요한 것은 이런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교사도 '어디까지 내가 지도가능한건가?'의 경계가 생겼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학생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도 사랑의 매라고 내면화했는데, 폭력을 폭력이라고 사회적으로 규정해준 것이 교사들에게 고민에 빠지지 않게 해준 것이다. 그러다보니, 교과부가 부랴부랴 절차적 형식을 강화한 교칙이 학생인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논리를 펴기 시작했다<sup>2)</sup>. 그래서, 학칙 기재 사항은 학교의 시스템이나 학사 일정임에 비해 7호에 엉뚱하게도 두발, 용의복장이 들어있는 것이다. 사실 상위법으로 하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보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한 초중등교육법 18조 4항이나 헌법,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우위에 있어야하지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민주적 절차만 지키면 '어떤 학칙'도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기에 이른다. 하지만 지금 현재 학생들의 처지가 민주적 절차에 초대받을 수 있는 처지인가? 여전히 설문조사나 공청회가 기피되는 상황에서 학칙보다는 별이나 불이익이 만연한 사회에서 학칙은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원론적으로 정말 절차만 지키면 그 어떤 것도 안 지켰을 때 징계를 가할 수 있는 '강제 규정'화 하는 것이 가능한가?

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14] [[시행일 2008.3.1]]

제18조의4 (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 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14] [[시행일 2008.3.1.]]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2011.3.18., 2012.4.20., 2012.10.29.>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교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 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3.18., 2012.4.20., 2013.2.15.> [제목개정 2011.3.18.]

## 2. 학칙의 존재이유

그래서 학칙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질서의식’이나 ‘준법 정신’을 드높이거나 ‘학생다운 모습’을 갖추도록 하는데 있다.

용의 복장을 단정히 함으로써 (...) 긍지를 드높이고 학생다운 면모를 갖추어 질서의식과 준법정신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K고 교칙 발췌)

이 규정은 학생의 용의 및 복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상 단정하고 깨끗한 학생다운 모습을 갖추도록 하고, 건전한 학교생활을 하는데 있다. (D중 발췌)

학교는 삶의 공간이 아니라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야하는 공간이기에 ‘개인의 인권’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질서와 준법은 면학분위기를 주도하는 주체를 기준으로 형성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면학 분위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하지만, 학교라는 공간을 살아나가야 하는 학생들의 인권은 무시되기 일쑤였다. 그리고, ‘단정하고 깨끗한 수준’도 주체의 기준이 아니라 ‘보는 사람’이 기준이었다.

하지만, 실제 학교는 더 이상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야만 하는 공간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 교육과정 개정의 근간이 되고 있는 7차 교육과정의 인간상에는

1.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2.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3.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4.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5.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개성을 추구하고, 민주시민의식을 키우는 것을 교육과정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독 학칙만이 학생들의 개성을 획일화시키는 방향으로 틀 지워진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현재 교육과정과 불일치한다는 증거이다. 실제 학칙의 철학은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이라는 인간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서로의 다양성과 인권을 존중하도록 다음과 같이 만들어져야한다.

### 1조 (목적)

본 학칙은 학생들이 전인적인 인간, 공동체적 인간, 자연과 조화된 인간으로 성숙해가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 (철학)

학칙은 본교의 교육철학인 사랑과 자발성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그 원칙을 구현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간디학교 교칙-

뉴욕 가이드라인 학생 권리 및 책임 규정,  
 학생, 학부모 및 직원의 복리를 위해 상호 존경심을 갖도록 하는 것과 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과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정신을 강조하는 여러 활동과 프로그램에 학생들을  
 참여하게 하는 것은 뉴욕시 공립학교의 목표입니다. 학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의 상호  
 협력이 있을 때 비로소 학생 개개인을 위한 풍부한 학습 경험과 높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본 규정은 다양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시민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입니다.

### 3. 공모 사례로 본 교칙의 문제점

#### 1) 학생들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 공공연하게 학칙으로 명시되어 있고 학생의 권리 보장의 내용은 없거나 추상적이다.

공모된 사례에 의하면 두발규제, 복장규제, 기타용의규제 등 학생들의 개성실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내용들이 여전히 학칙으로 존재하고 있다. 특히 옆반출입금지, 고3독서금지, 운동금지와 같은 비상식적인 통제는 물론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성교제금지, 일괄소지품검사, 휴대전화금지, 강제보충야자 등과 같은 학생인권조례에 어긋나는 조항들이 여전히 학칙에 존재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교육의 목표와 무상하게 정치참여금지(대외행사참여금지), 학생의 표현 및 집단 행동금지)도 명시되어 있다.

학교 규칙 중 상당수는 비록 학교 생활에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집단이나 기관에서 규칙으로 다루서는 안 되거나, 부당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두발규제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고 하겠고, 교우관계나 연애를 금지하고 규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학칙이 차별적이거나 상위법의 인권 기준을 위반하는 것도 이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체벌 규정, 각종 차별적 내용,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금지하는 내용도 이에 해당한다. 규칙이 규율하는 방법이나 처벌이 적절한지를 논하기 이전에 그 규칙으로 금지하려고 하는 것 또는 그러한 규칙을 두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부딪히는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학교 규칙들 중 대다수가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구체적인 사항들을 쟁점으로 삼을 때면, 그것이 학교가 규제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와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기도 하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편적 인권의 목록을 놓고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내용의 규칙들을 도마에 올려서, 이것이 과연 불가피하고 정당한 규칙인지, 규칙으로 정하고 다루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권리는 그 동안 ‘부재’했기 때문에 교칙에 반영될 수 없었다. 이제 학생인권조례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 조례가 있는 시도지역조차 학칙에 학생의 권리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실제 우리 나라는 다음과 같이 선언적 서술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가.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권리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권리를 제한할 이유들에 대해서만 명시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교사에 대해서 규정한 국가 공무원법도 마찬가지이다. 3)

## 2) 기준이 불분명하고 자의적이며 차별을 정당화한다.

모든 학교가 '교사 지시 불이행'과 같은 내용이 없으나 교사의 모든 행동에 전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갖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사실 교사 지시 불이행과 같은 조항은 모든 학칙의 근거를 무효화시킨다. 학칙에 반영되어있지 않아도 교사가 지시하면 바로 학칙이 되기 때문에 민주적인 입법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용의복장에 관한 규정이 그런 경우가 많고, 무례함이나 불손함이나 지시의 불이행 등을 모두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교사가 학생을 관리하고 겁박하는 수단이 될 때가 많다. 학생 입장에서는 규칙에 제대로 나와있지도 않은 것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억울함이 많아지고, 더 극단적인 예로는 교사의 조치에 항변을 하거나 변명을 하기만 해도 가중처벌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학교의 징벌 결정 구조가 제대로 조직되어 있지 않으며 편파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학교 규칙이 형법 수준으로 명확성의 원칙을 따를 필요까지는 없다. 비효율적이고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적어도 학교 구성원 중 누군가 일방의 자의적인 적용을 제어할

---

3) 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3조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하거나 상징하는 복장 또는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 착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5장 정치 운동 및 노동 운동 <개정 2011.7.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7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65조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2.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하거나 원조하는 행위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과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3.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실는 행위
4.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旗)·완장·복식 등을 제작·배부·착용하거나 착용을 권유 또는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기는 해야 한다. 이는 규칙 자체를 보완하는 것과 규칙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절차와 과정을 좀 더 합리적인 형태로 조직함으로써 가능하다. 즉 학교 규칙을 새롭게 바꾸고자 한다면 직접적인 약속과 징벌에 대한 규정 외에도 규칙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절차와 과정에 대한 규칙 역시 제안해야 할 것이다. 즉, 규칙은 계약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규칙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학교 규칙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 규칙을 '원래 있었던 것'이라고 말한다. 즉 내용을 결정하거나 만들거나 참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왜 그것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어도 고치거나 없앨 수 없다고 생각한다. 법은 인간 사회에서 필요하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원래 마치 학교 규칙이 원래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은 민주적인 입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또, 많은 학칙들이 성적으로 인한 피선거권 제한이나, 급식에서의 남녀 차별 등을 정당화함으로써 공개적으로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것은 학칙이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전제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오히려 학칙은 차별적인 관행이 '공개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차별을 금지해야 하는데 차별을 조장하는 학칙이 있는 것은 큰 문제이다.

### 3) 반인권적인 처벌 규정과 통제방식을 제도적으로 인정한다.

학생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조치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다.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동기, 과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처리하되 교육적인 면을 중시하여 선도 위주로 한다.

사실상 현재의 학칙은 학생에 대한 '징계'를 지도의 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에 대한 징계는 실제로 학교라는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사법처리'에 가깝다. 그리고, 이것이 사법처리와 구분되려면 다른 불이익과 이어지지 않아야 하는데 반해 대부분의 학칙은 징계기록을 포상이나 피선거권 제한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징계자체를 교육적 중재나 지도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징계를 대신하는 체벌, 압수, 물품폐기, 집단처벌(연좌제), 식사금지, 외출금지, 반성문, 각서쓰기(강제적인동의서작성), 깎지쓰기, 축제참여제한(학교행사참여금지) 등을 벌칙으로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단은 대부분 학교 밖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별이거나 가능성이 높은 수단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학칙이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낼 경우 대부분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즉, 실질적으로 상위법에서 보장하는 법률을 어기고 있는 자의적인 조항의 존재는 민원 증가와 다툼의 소지를 증대시킬 가능성이 높다. 즉 교사도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지도 수단이 명확할 때 오히려 인권침해를 할 가능성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교육적 조치의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고 학생에게 변론권을 충분히 보장하여 교사가 학생인권침해로 인한 피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즉, 교사를 위해서라도 교육적 조치와 징계를 구분하여 징계 절차로 가기 이전 교육적 중재 및 지도 단계를 두고, 징계에 있어서는 학생의 변론권 및 징계를 내릴 수 있는 한계와 절차가 명확히 안내



되어야한다.

프랑스의 경우

**교내 교육적 조치 (행정재판소의 소청대상이 되지 않음)**

- 가정, 학교의 연락수첩에 등재
- 현장에서 바로 또는 추가 과제 부과
- 수업 중 일시 추방
- 하지 않은 숙제나 연습을 하기 위한 현장 학습

(교내 벌칙들과 징계들을 잘 구분하면 단위학교에서 교원들이 가지는 교육적 역할들의 상호 보완성 그리고 학생들의 문제 행동의 다양성과 심각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가령, 무례함과 인격모독사이의 구분은 정황과 상황을 고려해야한다. 불손한 행위의 성격과 선택된 조치의 방식이 조화로울 때마다 교사의 권위는 강화될 것이다)

**징계의 원칙 (행정재판소의 소청대상-상호 반박의 원칙과 자기 방어권의 존중)**

- 1) 교사는 학생에 대한 징계를 기관장에게 요청할 때 기관장이 그 상황에 대한 책임을 맡는데 대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한다. 그렇다 해도 그들이 기관장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특별한 제재를 강요할 수 없다.
- 2) 징계는 행정재판소에 소청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원칙과 절차들이 엄격히 존중되어야한다.
- 3) 방어의 권리를 존중한다. : 징계받는 자의 요구에 따라 문서로 또는 음성으로 된 관찰기록을 제시하는 대상인 학생에게 참석 또는 대리인의 참석을 허락한다.
- 4) 사실을 확인하고 또 징계를 요구하기 위해 서로 반박하는 방식으로 증거의 요소들에 대해 논쟁할 수 있다.
- 5) 학생이 듣고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게 허락하여야한다. 또한 그에게 그의 잘못과 그가 받게 될 징계를 설명하는 것이 좋다. 징계가 교육적 역할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실상 그 징계가 이해되어야하고 가능하다면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다.
- 6) 내려진 징계에 대해서는 학생이 이해해야하고 그와의 대화가 이루어져야한다.
- 7) 학생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학생, 학생대표)을 자신의 방어를 위해 참석시킬 수 있다.
- 8)늦어도 선도위원회가 열리기 8일전까지 등기우편으로 부쳐진 출석요구서 속에서 기관장은 명확히 학생에게 지적된 사실들을 알린 서류를 가지고 나오도록 요구하고, 그에게 구도로 또는 서면으로 자신의 변론을 제출할 수 있고 또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대리출석시킬 수 있음을 알려야한다.

**4) 학교 규칙의 대다수는 학생을 규율하는 내용만으로 구성되어있어 입법의 주체와 준법의 주체의 불균형 하다.**

보통의 법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국민들의 민원과 발의를 통해 필요한 법을 만들고 국민들은 정당한 과정을 통해 발의된 입법을 지키는 구조이다. 그런데, 학교 규칙은 대부분 '학생'을 주어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사와 학부모와 합의 해야한다. 입법의 주체와 준법의 주체가 다른 것이다. 하지만 학교 규칙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구성원들 사이에 필요

한 약속이라면 학생만이 아니라 교직원 등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는 학교 구성원 전체에게 적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학교 교사는 교원에 관한 각종 상위법규들로 이미 규율을 당하고 있기에 학교 규칙으로는 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원 일반의 행동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그 학교 차원의 규칙은 별도로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또한 학교 차원에서 교직원이 다른 교직원이나 학생에 대해 인권침해를 하거나 잘못을 했다면 이리이러한 상위법규에 따라 징계를 하도록 한다는 형식으로도 규정을 둘 수 있다. 이러한 약속을 학교 차원에서 재확인하고 명시해두는 것은 얼마든지 의미 있는 일이다. 또한 꼭 처벌에 관한 규정만이 아니라 더라도 여러 가지 생활하는 동안 서로 지켜야 하고 공유해야 하는 약속들이 있으며 이는 학교 구성원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적 규칙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아예 학교 규칙의 구조 자체를 학교 구성원 일반에게 적용되는 사항과 교사에게만 특별히 직원에게만 특별히 학생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사항 등으로 구조를 짤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학교 민주주의를 고민한다면 학칙의 내용이 학생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지켜야 할 것으로 주체가 바뀌어야 한다.

## 4. 나오며

4) 교육부는 학교 규칙 제, 개정 방향에 대해 ‘교사, 학생, 학부모가 토론을 통해 합의 하여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현재의 규칙을 교사, 학생, 학부모의 합의에 맡기는 것은 당사자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배제한 채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명령을 ‘법규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법은 헌법이라는 가장 큰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합의이다. 그런데 교육부의 학칙 제, 개정 방향은 규칙을 만드는데 기본이 되는 원칙이 되는 학생인권의 보장원칙과 기본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이 교사, 학생, 학부모라는 불균형한 주체의 모호한 바람과 합의를 규칙의 근거로 삼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함이 방치될 수 있는 이유는 교육부의 학교 규칙에 대한 행정 지침이 학생이 지켜야 할 규칙을 학생 스스로의 합의가 아니라 그 규칙에 적용받지 않는 교사와 학부모의 임의적인 합의에 맡겨놓기 때문이다. 이것은 학교의 자율성으로 둔갑하여 자의적인 인권침해를 방치하고, 학교를 주체들 간의 쟁송의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실제로 학생인권조례가 실시되는 서울의 경우 학생인권조례가 지켜지지 않는 학교의 학생들은 학생인권침해를 교육청에 신고해야지만 학생인권조례에 의한 인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임의적인 합의로 만들어진 학교 규칙 속에서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 어느 만큼의 인권이 존중받는지 달라지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진다. 포털 사이트에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가장 큰 궁금함은 그 학교의 두발 규정이다. 이것은 동일한 지역의 학교라도 어떤 학교를 가느냐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받는 대접이 다르다는 것을 학생들이 생득적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학생이라면 누구나 이 정도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인권의 내용이 학교 규칙 제, 개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

4) 학교규칙 운영매뉴얼, 2012, 교육부

<참고>

뉴욕 가이드라인

I. 무료 공립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

공립학교는 성숙도에 따라 각자 다른 권리를 갖춘 다양한 연령층에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무료 공립학교 교육에 대한 권리는 모든 학생에게 보장된 기본적인 “학생 권리”입니다.

학생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으로 규정된 바와 같이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때까지 또는 고등학교 졸업 전에 21세가 되면 그 때까지 무상으로 공립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 영어학습학생 (English Language Learners)으로 판정된 학생의 경우 이중언어 교육 또는 제2 언어로서의 영어 교육을 받을 권리, 특수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정된 장애 학생의 경우 3세부터 21세까지 무상으로 공립교육을 받을 권리
2. 차별, 괴롭힘, 편견이 없는 안전한 학습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와 이런 문제와 관련된 피해를 입었다고 느꼈다면 피해접수를 할 수 있는 권리
3. 연령, 실제 또는 인지되는 인종, 신념, 피부색, 성별, 성 표현, 종교, 출신 국가, 시민권/체류 신분, 성적 성향, 신체적 및/또는 정신적 상태, 장애 사실, 혼인 여부, 정치적 신념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 받을 권리
4. 학년 초, 또는 학기 중 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입학 즉시, 규율규정과 뉴욕시 교육청의 학생 권리 및 책임 규정 등 학교 방침 및 절차 규정이 적힌 인쇄물을 받을 권리
5. 교과목 및 시험을 포함하여 졸업장 취득을 위한 필수 조건과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에 관한 정보를 받을 권리
6. 건강 조건, 인지 능력 및 언어 능력 시험에 관한 정보를 받을 권리
7. 학교에서 제공되는 교과목 및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받고 선택 과목을 고르는 데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 권리
8.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
9. 학교에서 제공되는 모든 과목의 채점 기준을 알 권리, 그 기준에 근거하여 제출한 과제물의 점수를 받을 권리
10. 교사나 학교를 통해 또는 공식적인 진척도 보고서를 통해 학습 진척 상황을 통보 받을 권리
11. 유급 또는 과목 낙제를 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신속히 통보 받을 권리
12. 유급 또는 과목 낙제를 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통보 받을 권리
13. 고등학생의 경우 본인의 학사 기록을 검토할 권리 (기록을 검토할 수 있는 권리는 학부모 또는 부모 역할을 맡은 성인과 해당 학생에게만 허락됩니다.)
14. 학교의 학생 기록 취급에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15. 고등교육 기관 및/또는 모병 기관에 연락 정보를 제공하지 말도록 부모를 통해 요청할 수 있는 권리
16. 개인적, 사회적, 교육적 성장과 진로 및 직업 개발에 있어 안내, 상담 및 조언을 받을 권리

II. 표현 및 개인의 자유에 대한 권리

뉴욕시교육청이 수립한 방침 및 절차에 따라, 모든 학생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며,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조직을 결성하여 모임을 갖고 평화적이고 책임 있게 시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학생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회 대표 조직을 구성하고, 홍보하며, 참여할 권리
2. 평등 이용법(Equal Access Act)에 규정된 요건에 부합하는 학생 단체, 사교 및 교육 클럽/팀, 정치,종교, 철학 모임을 구성하고, 홍보하며, 참여할 권리
3. 교육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위원회를 대표 할 권리 (필요 시 투표권도 행사)
4. 책임 있는 발행 방식과 정당한 교육적 관심사에 근거한 합리적인 규정 내에서 학교 생활을 반영하고 학생들의 관심사와 견해를 표현하는 학교 신문과 학교 뉴스레터를 발행할 권리
5. 명예를 훼손하거나, 외설적이거나, 상업적이거나, 혹은 물질적으로 학교에 피해를 가하거나 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한 신문, 글 또는 정치적 전단을 학교 내에서 배포할 수 있는 권리. 단,배포 시간, 장소, 방법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정한 합리적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6. 정치적인 것을 포함한 다양한 버튼, 배지, 및 완장을 착용할 권리. 그러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외설적이거나, 혹은 실질적으로 학교를 혼란케 하거나 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는 예외
7. 학교에서 정한 합리적인 지침에 따르는 범위 내에서, 학교 내 게시판에 게시물을 붙일 권리. 그러나 게시물이 명예를 훼손하거나, 외설적이거나, 상업적이거나, 혹은 물질적으로 학교에 피해를 가하거나 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거나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는 예외
8. 교복 관련 교육청 방침 및 종교적인 표현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복장을 결정할 권리. 복장이 위험하거나 또는 학업에 방해 가 되는 경우는 예외
9. 자신의 신변, 신분증, 소지품 등을 안전하게 지키고, 학교 내에서 사용이 허락된 개인 소지품을 학교 건물 안에서 가지고 낼 수 있는 권리
10. 몸 수색 등과 같은 부당하거나 무차별적인 검색을 받지 않을 권리
11. 체벌을 받지 않을 권리(교육감 규정서A-420 및A-421에 의거);
12. 충성의 맹세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 맹세를 위한 기립을 거부할 권리

### III.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권리

모든 학생은 본 규정에 서술된 권리에 따라 공평하게 대우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율규정 및 학교 규칙과 규범을 제공받을 권리.
2. 무엇이 적절한 행동이며, 어떤 행동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리는지 알 권리
3. 학생의 학교 내 교육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전문 지식을 갖춘 직원에게 상담 받을 권리
4. 특정 위반 행위에 대해 내려질 수 있는 처분과 결과를 알 권리
5. 자신에게 부과된 징계 조치의 이유를 신속히 서면으로 통보 받을 권리
6. 학교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어 정학, 또는 퇴실 조치될 경우,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권리
7. 본 규정에 서술된 권리 및 책임과 관련 담당 교직원이 내린 조치와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알 권리

- 8. 면담이나 공청회에 학부모나 부모 관계에 있는 성인 및 대리인과 동반 참석할 수 있는 권리
- 9.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학교 직원이 참석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
- 10. 자신의 학생 기록에 입력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설명할 수 있는 권리

독일 김나지움	
일반적인 원칙	개별 세부 원칙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한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다른 의견이나 생각을 존중한다 어떤 형태의 폭력도 용납하지 않는다 갈등이 생기면 외면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는다. 비판이란 언제나 공정한 해결책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학생이 지켜야 할 원칙 - 폭력 사용하지 않기. 객관적으로 해결점 찾기. 수업을 방해하지 않기. 학급 공동체를 모두에게 열려 있도록 통합하기 등 학부모가 지켜야 할 원칙 - 자녀의 인격적, 사회적 발전을 장려하기. 학교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등 교사가 지켜야 할 원칙 - 전문성 있는 수업하기. 학생에게 적절한 도움 주기. 관리자가 지켜야 할 원칙 - 구성원의 이해를 공정하게 조정

<참고문헌>

외국의 생활규정 들여다보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규칙 재, 개정 매뉴얼, 교육부

## 발제2 : 현 학칙을 개선하기 위한 원칙과 방향

### 학칙, 어떻게 인권친화적으로 변해야 할까?

공현

불량학칙 공모전을 통해 살펴본 대한민국 학교의 학칙은 마치 신체포기각서와 노예 계약서를 떠올리게 한다. 이들 학칙 안에는 오로지 통제와 처벌이 난무할 뿐 학생의 권리 보장은 찾을 길이 없다. 뿐만 아니다. 불량학칙 공모전 사례에서 보았듯이 학칙에도 없는 비인권적인 통제와 인권침해가 교육과 생활지도라는 명목으로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학칙은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는 문서이다. 특히 생활규정 등은 학생들의 학교생활 속에서 법규와 같은 역할을 하며 학생, 교사 등 학교 구성원의 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이 문서에는 교육의 철학과 학교 구성원들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학칙은 헌법의 기본 가치들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한국 학교들의 학칙에는 헌법의 기본 가치, 민주주의와 자유와 평등, 인권보장의 기본 가치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이제는 노예 계약서, 신체 포기 각서 같은 학칙을 민주적으로 인권적으로 바꾸어야 할 때다. 이는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와 자유, 평등을 가르쳐야 할 학교의 가장 중요한 본분을 되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는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우선 과제로 학칙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인권친화적 학칙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일곱 가지 원칙을 제안하고자 한다.

#### 1. 학칙 제정 목표는 학생인권의 보장이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의 제정 목표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처럼 학칙의 제정목표도 당연히 학생 및 학교 구성원의 기본권인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학교와 학칙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현재의 학칙 중 학생의 인권보장과 권리를 제대로 명시한 학칙은 거의 없다. 일부 명시한 학칙들도 학생인권조례 등의 내용을 그대로 고민 없이 베낀 것들이 대부분이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권리 보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학생에 대한 강력한 통제와 억압을 정당화하는 내용들로 가득하다.

그러므로 현행 학칙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더불어 학칙 안에 학생 인권보장을 명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새로운 학칙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 우리는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여러 권고 등을 통해, 이미 학칙에 대해 어느 정도의 가이드

라인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학생들을 통제하는 내용 위주로 만들어진 학칙, 자의적인 학칙, 학교가 규율할 범위를 벗어난 학칙 등의 고질적 문제들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는 이후 새로운 학칙의 모델 및 예시안을 만들어 보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2. 학칙의 기준을 벗어난 자의적인 판단과 비인권적인 통제 처벌은 사라져야 한다.

학칙이 학교에서 학교 운영과 학생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 학칙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 학생이나 교사가 거의 없는 경우도 많은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학생의 통제를 위한 일부 별점 규정 등의 학칙 내용 이외에는 학칙을 들여다보지 않고 오히려 학칙의 내용과 상관없이 교사의 임의적인 지도와 통제가 자행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는 단지 학칙 개정만으로 학교의 인권침해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학칙이 학생인권보장을 그 기본 방향으로 정한다는 것은 단지 학생인권 보장을 학칙에 명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통제하는 여러 가지 규정-학급규칙, 학년 규칙, 상벌점제, 기타 여러 규정들이 만들어지고 바뀌는 것에 인권 보장이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학칙의 기준에서 벗어난 교사의 자의적 판단과 비인권적인 통제와 처벌은 즉각 사라져야 한다. 교사가 교육적인 지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나 학생의 권리를 분명히 해야 하며, 합의된 규칙을 벗어나서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 3. 학칙 제개정의 원칙과 과정은 민주적으로 열려 있어야 한다.

학칙의 제정 및 개정 과정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쉽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많은 학교들이 학칙을 만들고 바꾸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를 알리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또한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학생회 임원 혹은 일부 학부모 대표에게 형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학칙 제개정 과정은 일부 대표만이 아니라 전체 학교 구성원들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학교에서는 설문지, 가정통신문, 학생 또는 교사의 자치회의 과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칙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학생회 등의 자치기구가 학생들 사이에서 학칙 제개정을 공론화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물적 지원을 학교가 제공해야 함은 물론이며, 학생들이 학칙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평화적 활동을 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학칙 개정에서는 학칙 개정안을 쓰는 형식이나 절차가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특히 학생들이 개정안 자체를 내는 것을 꺼려 할 수밖에 없다. 개정안 제출 절차를 어렵지 않게 만들고 형식을 간소화해야 학생들이 스스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학기당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학칙을 개정할 수 있는 시기가 보장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시기를 지났다 하더라도 긴급하게 학칙 개정이 필요할 때 학칙 개정을 요구하고 이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학교 구성

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 4. 학칙 제개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동등한 참여와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학칙 제개정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구(예 : 학칙 개정위원회)에 의결권을 가진 학생들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학부모·교사의 수와 동등하거나 더 많도록 보장해야 한다. 학칙의 대부분의 개정 내용이 학생 생활과 직간접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령 학생들만을 주된 적용대상으로 삼은 현행 학칙들의 문제점을 개선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실제로 생활하지 않는 학부모나 교원에 관한 법령 등을 따르는 교사들에 비해서 학칙의 영향력은 학생들에게 더 크게 작용할 개연성이 크다. 덧붙여 개정위원회 회의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개정위원회 회의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학교 구성원들의 참관을 보장하고, 대표 학생이 아니더라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발언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는 것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학칙 개정위원회에서 의결한 학칙안은 합리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법적으로 학칙 제정의 권한을 가진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의결된 개정안을 거부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명확하고 합당한 이유를 밝혀야 하며, 협의의 통해서 개정안의 취지를 존중하는 수정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개정안이 인권침해 소지나 상위법 위반 등의 문제가 없을 경우 재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승인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보장이 필요하다.

#### 5. 학칙은 접근하기 쉽게 공개되어야 하고, 충분한 공지와 검토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학칙 개정 이전에, 일단 학칙에 대해 학생들과 학부모 교직원이 접근하기 쉬워야 한다. 그런데 많은 학교에서 홈페이지에서 학칙을 찾기 어렵거나 검색을 통해야만 겨우 볼 수 있거나 ‘학교알리미’에만 학칙을 공개하고 있다. 심지어 공개되지 않은 학칙이나 규정이 시행되는 경우도 많다. 학칙은 학교의 기본적인 운영 방법을 나타내는 공식적인 규정이므로 당연히 내외부의 사람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학교에서는 단순히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공개해야 하며, 학칙의 내용에 대한 홍보기간을 따로 정하여 학교방송, 게시판,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학칙이 개정된 직후에는 개정된 내용을 공지하는 기간을 정해야 한다. 그리고 공개된 학칙에 대해서 학교 안팎의 시민들이 이를 살펴보고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장려해야 한다. 이는 학칙 안에 인권침해적이거나 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현재도 학칙을 ‘학교알리미’ 등에 공개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불합리한 학칙 내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학칙의 내용과 운영에 대해서 모니터링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옴부즈퍼슨을 두거나 교육청 등이 점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을 가져야 한다.

#### 6. 인권을 침해하거나 상위법을 위반하는 학칙에 대해 효력정지와 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

많은 학교의 학칙들이 헌법, 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등의 상위법을 무시한 채로 그대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학칙이 개정되기 전까지 학생들이 불합리하고 비인권적인 학칙에 적용을 받고 생활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학칙의 내용이 학생인권조례 등의 상위법과 위배되는 것이 명백할 경우 이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문제제기를 하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소정의 절차를 걸쳐 개정 전까지 문제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학교만이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창구와 절차를 마련하여 효력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는 학칙에 이러한 문제가 있더라도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어떠한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마치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신청할 수 있듯이, 교육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기관에 구제를 청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인권침해이거나 상위법 위반이라고 결정되는 학칙을 무효화하고 개정 명령을 내림으로써 학칙의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어야 한다.

#### 7. 교육부와 교육청의 책임 있는 감독과 지원이 필요하다.

학칙은 학교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의견수렴의 과정과 절차를 가지고 제·개정되어야 하지만, 이는 단지 학교 구성원의 형식적인 참여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 한 학교의 학칙이 학교 구성원의 기본적인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 그 기준을 제시하고 확인 감독하는 역할은 당연히 교육부와 교육청이 해야 할 몫이다. 학칙의 기본 원칙이 학생들의 인권보장을 명시하는지, 학칙 제·개정에서 민주적인 절차와 의견수렴을 거쳤는지, 학칙의 기본 방향에서 벗어나는 자의적인 규정과 규칙들은 없는지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끊임없는 관심과 감독이 필요하다.

또한 지금껏 권위적이고 비인권적인 학칙과 학칙개정 절차만을 알고 있는 교원들에게 학칙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교육과, 제대로 된 학칙의 기본상을 제시해 줄 구체적인 로드맵을 지원 하는 등 학칙의 인권적이고 올바른 변화를 위한 실질적인 차원의 학교 지원을 해야 한다.

현재, 단지 학교 규칙 제정은 학교구성원의 일이니 관여하지 않겠다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태도는 학생들의 인권 보장과 민주적인 학교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교육부와 교육청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 MEMO

---

# MEMO

---